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정 2014. 07. 1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36호 개정 2015. 12. 1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65호 개정 2016. 08. 0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43호 개정 2017. 08. 29.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05호 개정 2018. 01. 09.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04호 개정 2021. 03. 05.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16호 개정 2022. 04. 01.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22호 개정 2023. 09. 15.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89호

2023. 0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89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정 2014. 07. 1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36호 개정 2018. 01. 09.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04호 개정 2022. 04. 01.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22호 개정 2023. 09. 15.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8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이노비즈"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말한다.
- 2. "업력"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속 유지된 기간으로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일로부터 이노비즈 선정 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때 휴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3. "평가기관"이란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서 기술보증기금을 말한다.
- 4. "이노비즈넷"이란 이노비즈를 선정·관리하고, 이들 기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구축한 종합정보망(www.innobiz.net)을 말한다.

- 5. "자가진단"은 이노비즈로 선정 받고자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이노비즈넷 에 구축된 해당 업종의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에 따라 스스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 6. "기업합병"이란 두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되면 서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7. "중소기업통합"이란 개인중소기업 간의 통합 또는 개인중소기업과 법인 중소기업 간의 통합방식에 의해 법인중소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8. "회사분할"이란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9.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한다.
- 10. "관리기관"이란 이노비즈 평가지표 개발, 제도개선, 이노비즈넷 관리· 운영, 현장평가업무 관리 등 이노비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이하'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이노비즈 신청대상) ① 이노비즈로 선정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다.
 - 1.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 2.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F')
 - 3. 농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A01')

- 4. 비제조업(제조업, 건설업, 농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
- 5. 소프트웨어업

업 종	산업분류코드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1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2
기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1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J62010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J62021

- 6. 바이오업(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 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표」중 바이오산업 적용가능 업종및 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 7. 환경업(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련기술을 이용하여 오염 저감시설 및 기기 등을 설계, 제작, 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 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 분류표」중 환경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 8. 전문디자인업(한국표준산업분류-M732)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 1.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 3. 신용도판단정보, 5. 공공정보의 1) 체납 정보 등"에 등록 중인 기업(단, 제3호의 단서 조항 적용 기업은 예외)

-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3.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 4.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제4조(업종의 구분) ① 이노비즈 신청기업의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 큰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② 업종을 전환하는 기업은 실제 영위중인 업종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환하는 업종에 종사할 종업원 수, 생산설비투자 등을 감안하여 전환하는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이노비즈 평가지표 적용 시 업종구분은 신청기업의 영위업종 및 평가신 청 기술분야에 따라 제3조제1항의 업종 중 하나로 분류한다.
-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양도 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

- 3.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 4.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 ② 흡수합병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피합병된 기업의 업력을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피합병된 기업과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종이 동일할 것
 - 2.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의 50%이상일 것
 - 3. 피합병기업의 상근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합병 후 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 ③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소멸기업
 을 기준으로 적용
- 2.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설기업과 업종이 동일한 소멸 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 ④ 회사분할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1. 분할 이후 해당기업의 매출실적이 확인될 것
 - 2. 기존기업 또는 기존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분할 후 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 ⑤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흡수통합의 경우에는 제2항을,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하여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1. 통합 후 법인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통합 전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하고 통합 전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을 계 속 영위(통합 전 양기업의 업종을 동시영위 포함)할 것
-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설립·존속되는 법인의 주주일 것
- 3.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과점주주의 개인사업을 승계하는 것이 아닐 것
- ⑥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 법인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개인기업의 경우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제6조(이노비즈 평가기준) ①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3의 기술 혁신시스템 평가지표와 평가기관이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고시한 기술평가표로 한다. 다만, 평가기관은 기술평가표를 이노비즈넷에 고시 또는 개정고시하기 전에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평가지표, 운영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4의 기술·경영진단평가표로 한다.
- 제7조(이노비즈 신청) ① 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 이라 한다)이 이노비즈넷의 신청절차에 따라 일반현황, 재무상태 등을 입력하고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기관이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이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절차 중 신청기업의 자가진단 실시결과 평가점수가 65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현장평가 등) ① 제7조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받은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이 제3조에 따른 신청자격을 구비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평가 7일 전까지 평가일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준비할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 등을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평가일은 신청기업과 평가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별표 3에 따른 기술혁신시스템 해당 업종의 평가지표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고시한 기술평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위하여 신청기업의 업종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평가자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자의 현장평가 수행경험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을 1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청기업의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직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평가단은 현장평가 장소에 신청기업 소속이 아닌 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평가기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현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 절차, 세부 평가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신청취소 등) ① 신청기업이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 실시 전에 기업의 내부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현장평가를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평가기관에 이노비즈 신청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의 취소는 이노비즈넷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신청기업이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이노비즈넷에 입력한 정보 및 평가기관이 신청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수용하여 신청기업이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이노비즈넷에 입력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평가기관에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신청취소 후 재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를 삭제하거나 제출서류를 반려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현장평가업무 처리기간) ① 평가기관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노비즈넷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리기간은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21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간은 최대 90일까지로 한다.
 - 1. 제8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신청기업에게 통지한 평가일 전일까지 수수 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통지한 평가일로부터 수수료 납부일까지의 기간
 - 2. 제8조제1항의 평가계획을 통지한 후 신청기업이 평가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평가기관에 요청한 경우, 통지한 평가일로부터 신청기업의 요청에 따라 연기한 날까지의 기간
- 제11조(이노비즈 선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이고, 기술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이노비즈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은 평가기관이 평가결과를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 ② 평가기관은 평가결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 대상기업이 아 닌 경우에는 해당기업에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기업 으로부터 평가결과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 제12조(확인서 발급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이노비즈 영문확인서(이하 "영문확인서"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이노비즈 중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확인서의 발급·승인에 관한 업무는 해당 신청기업의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수행한다. 단, 영문확인서의업체명, 대표자, 주소는 대문자로 명기하고, 영문 성명은 여권정보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확인서 발급지역은 기업의 본사를 기준으로 하고, 확인서 발급명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확인서의 발급번호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따라 부여한다.
 - 1. 확인서의 발급번호는 11단위(000000-00000)로 부여한다.
 - 2. 앞부분 6단위 중 첫째·둘째자리는 발급년도, 셋째·넷째자리는 발급지역, 다섯째·여섯째자리는 평가지표를 의미하며 다음 각목에서 정한 표기방 법 및 표기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 가. 발급년도 표기방법 : 발급년도의 마지막 2자리(예 : 2014년의 경우 "14"로 표기) 숫자로 표기
 - 나. 발급지역의 표기기준 : 서울은 01, 부산은 02, 대구·경북은 03, 광주·전남·제주는 04, 대전·세종은 05, 경기는 06, 인천은 07, 강원은 08, 충북은 09, 전북은 10, 경남은 11, 울산은 12, 충남은 13으로 표기

- 다. 평가지표 표기기준 : 제조업은 01, 비제조업은 02, 소프트웨어업은 03, 환경업은 04, 바이오산업은 05, 건설업은 06, 전문디자인업은 07, 농업은 08로 표기
- 3. 뒷부분 5단위는 발급지역, 평가지표와 관계없이 매 연도별로 확인서를 발급한 순서에 따라 이노비즈넷을 통해 발급번호를 부여한다.
- ③ 등급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한다.
 - 1.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 800점 미만인 경우 "A" 등급
 - 2. 평가점수가 800점 이상 900점 미만인 경우 "AA" 등급
 - 3. 평가점수가 900점 이상인 경우 "AAA" 등급
- ④ 유효기간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⑤ 선정기업은 제1항의 확인서를 이노비즈넷과 중소벤처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⑥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선정기업에게 제1항의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상 태임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13조(확인서의 재발급) ① 이노비즈로 선정된 기업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1. 상호,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 2. 확인서의 분실·훼손 등의 경우
 -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수·합병, 통합, 조직변경 등을 사유로 이노비즈 선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 받은 지방중소 벤처기업청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확인서를 재발급 승인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재발급할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확인서의 본문 아래 부분에 재발급 사유 및 재발급 일자를 명기하여야 하며,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확인서 번호의 지역코드를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선정의 승계)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노비즈 선정의 승계가 가능하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확인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 1.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2.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인 경우(단,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가 아닌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3.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제5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이 노비즈인 경우
 - 4.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제5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단, 흡수통합의 경우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호 규정을 준용하여 승계 가능여부를 결정한다.)
 - 5. 「상법」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을 변경한 경우
 - 6. 제13조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의한 가업 상속공제를 받은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 제15조(유효기간의 연장) ①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선정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사실을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해당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만료 35일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 연장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술·경영진단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평가결 과를 신청일부터 21일 이내에 이노비즈넷에 등록하여야 하며, 제10조 제2 항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기업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기업으로 하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대하여 평가기관이 평가결과를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갱신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 연장기간은 확인서 발급일이 기존 유효기간 범위 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3년으로 하고, 기존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확인서를 발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 ④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유효기간 연장에 의한 확인서의 갱신발급은 최초 발급된 확인서의 번호를 그대로 부여하고, 확인서 번호의 앞쪽에 R표기를 더하여 신규지정과 구별되게 한다.
 - ⑥ 평가기관은 제2항 및 제4항의 업무를 관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사후관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노비 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기술혁신시스템 운영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 제17조(선정취소)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노비즈 선정기업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기업에 대하여 이노비즈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선정기업이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
 - 2.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
 - 3. 제3조에 따른 이노비즈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
 - 4. 휴·폐업, 조업중단, 금융규제, 국세체납 등으로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한 경우
 - 5. 기타 제16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평가기관은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선정취소 사유를 발견할 경우 해당기업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선정기업이 선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 해당기업을 지방중소 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취소하였을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15일 이내에 해당기업의 확인서를 반납 받아야 하며, 선정취소 사실을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수수료 등) ① 신청기업은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 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하되 신청기업이 부담한다.
 - 1. 제7조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의 경우에는 70만원을 수 수료로 한다.
 -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의 유형으로 확인받은 벤처기업이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이노비즈 선정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기업의 수수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 3. 제15조에 따른 선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현장평가의 경우에는 40만원을 수수료로 한다.
- ② 수수료를 납부하고 현장평가를 진행한 경우에 신청기업은 수수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의 경우 현장평가 탈락 시 수수료 일부 반환을요청할 수 있다.
- ③ 관리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수료 징수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9조(이노비즈 선정 관련정보 관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노비즈 확인서 발급현황, 대표자·상호·소재지 등의 변경에 따른 확인서 재발급, 이노비즈 선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확인서 갱신발급, 이노비즈 선정 취소 등의 경우 이노비즈넷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 제20조(이노비즈 정보관리) ①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자가진단, 현장평가, 사후관리 등의 현황을 관리기관, 평가기관 및 해당기업이 수시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이노비즈넷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 ②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통계현황 등을 매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21조(세부지침의 제정)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기업 선정·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벤처 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22조(이노비즈 협의회) 관리기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노비즈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89호, 2023.9.1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신청되어 처리 중인 이노비즈 선정 및 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노비즈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1]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표

1.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적용가능 업종

분류번호	업 종	산업분류상 경	적용가능분야
A01	농업	바이오	
A02	임업	바이오	
A03	어업	바이오	
C10	식료품 제조업	바이오	
C11	음료 제조업	바이오	
C20	화합물 및 화학제품(의약품제외)	바이오	환경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마이조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		환경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바이오	
F41	종합 건설업		환경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바이오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바이오	환경
M71	전문서비스업		환경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바이오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E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Q86	보건업	바이오	
E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됩니
E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

2. 바이오산업 기술분야

순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적용분야
1	C 화학	C2 유기화학		바이오
2	D 생명과학			바이오
3	E 지구과학	E4 해양과학	E42 해양기초기반기술	바이오
4			E46 해양생물자원이용기술	바이오
5	F기계	F1 자동화기술	F14 로봇 및 기계자동화 기술	바이오
6		F4 정밀기계	F422 의료기기	바이오
7		F5 보건의료기계		바이오
8		F6 극미소기전	F65 바이오미소기전시스템	바이오
9		F7 극한첨단복합	F71 초소형/극미세기술	바이오
10	G 재료	G1 금속재료	G14 화학생체기능재료	바이오
11		G2 세라믹재료	G25 생체화학기능재료	바이오
12		G3 고분자재료	G34 분리, 환경 및 생체기능재료	바이오
13	H 화학공정	H1 촉매 및 반응		바이오
14		H2 분리 및 정제		바이오
15		H5 정밀화학공정	H51 유기합성공정	바이오
16			H53 생리활성의약물질제조공정	바이오
17			H54 생리활성향장약물질제조공정	바이오
18			H55 생리활성농약물질제조공정	바이오
19			H56 특수기능성물질제조공정	바이오
20			H57 정밀화학중간체제조공정	바이오
21		H7 생물화학공정		바이오
22	I 전기전자	I2 전자제품	I24 의료전기전자	바이오
23		I8 미소극미소전자	I83 바이오전기전자	바이오
24	L 농림수산			바이오
25	M 보건의료	M1 의과학		바이오
26		M2 의약품		바이오
27		M3 의료공학		바이오
28		M4 식품안정성		바이오
29		M5 의료정보학		바이오
30		M6 한의학		바이오
31		M7 치의학		바이오
32		M8 화장품		바이오
33		M0 기타		바이오
34	O 에너지자원	O5 신재생에너지	O53 바이오매스	바이오
35	P 원자력	P6 방사선방호/이용	P63 방사선식품공학	바이오
36			P65 방사선의 의학적이용	바이오
37			P66 방사선의 생물학적영향평가	바이오
38	R 해양	R7 해양환경	R79 해양기초기반기술	바이오
38		R8 해양자원	R82 해양심층수/용존자원이용	바이오
40			R83 해양생물자원이용	바이오

[※] 음영 처리된 분류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바이오산업의 해당 기술분야로 판단

3. 환경산업 기술분야

순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적 용분 야
1	E 지구과학			환경
2	F 기계	F1 자동화기술	F12 측정/감시/진단기술	환경
3		F2 육상수송기계	F24 진동/소음저감기술	환경
4		F3 에너지/환경기계	F34 수처리설비	환경
5			F35 폐기물처리설비	환경
6			F36 대기오염방지설비	환경
7			F30 기타 에너지/환경기계	환경
8		F9 표준/측정/시험평가	F92 시험/검사기술	환경
9	G 재료	G3 고분자재료	G34 분리/환경 및 생체기능재료	환경
10	H 화학공정	H9 환경/에너지공정	H92 환경/에너지공정	환경
11	I 전기전자	I6 전기응용기술	I66 환경관련전기전자	환경
12	N 환경			환경
13	O 에너지/자원	O3 에너지절약		환경
14		O4 청정에너지		환경
15		O5 신재생에너지		환경
16	P 원자력	P5 방사성폐기물관리	P52 방사성폐기물처리	환경
17			P53 사용후핵연료관리	환경
18			P54 원자력시설제염/해체	환경
19			P55 방사성폐기물처분	환경
20			P56 방사성환경영향평가	환경
21			P50 기타	환경
22		P6 방사선방호/이용	P61 방사선방호	환경
23	Q 건설/교통	Q2 건설관리/시공	Q21 건설용신소재/재활용	환경
24		Q5 수공시스템	Q52 수자원지속적개잘기술	환경
25			Q57 지하수관련기술	환경
26		Q6 건설환경/설비	Q61 상하수도시스템설계/시공/유지 관리	환경
27			Q64 건설폐기물관리	환경
28			Q65 건축환경기술	환경
29	R 해양	R7 해양환경		환경
30		R9 조선/해양장비	R95 동력기관 및 보조기계	환경

[※] 음영 처리된 분류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산업의 해당 기술 분야로 판단

[별표 2]이노비즈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코드번호	
업종분류	고드인호 (세세분류)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여관업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55909	그외 기타 숙박업
	56111	한식 음식점업
	56112	중식 음식점업
	56113	일식 음식점업
	56114	서양식 음식점업
	56120	기관구내식당업
	5611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56131	출장 음식 서비스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6193	치킨 전문점
	56194	시선 선도함 분식 및 김밥 전문점
	56132	이동 음식업
	56199	그외 기타 음식점업
	56211	그러 기다 금색점합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56219	무도유흥 주점업
	56191	기타 주점업
	56220	제과점업
H 드 시 시 및	(0444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68111	주거용건물임대업
임대업	68112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68119 68121	기다구중산림네립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68122	다기용신물개별 및 중요합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68129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68221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오락업 및	91121	골프장운영업
조익됩 홋 문화업	91121	==경단정법 노래연습장운영업
正好日	91223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	96111	이용업
중중, 구터 및 기타제 비스업	96111 96112	이용입 두발미용업
비트표	96112 96113	구릴미용업 피부미용업
	96119	기타미용업
	96121	시나미등 由 욕탕업
	96121	마사지업
	96129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96912	가정용세탁업
	96913	세탁물공급업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96922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96991	예식장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96993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96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별지 제1호 서식]

제 000000 - 00000 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확인서

업체명:

대 표 자 :

주 소:

등 급:

유효기간 :

위 업체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Certificate No:

CERTIFICATE OF Inno-Biz

Company: CEO: Address:

Validity of Certificate: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company is a Technology Innovation-Oriented Small and Medium Enterprise(Inno-Biz) selected by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echnology Innov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onth Date. Year

(직 인) minister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Republic of Korea 证书编号:

技术创新型中小企业(Inno-Biz)确认书

企业名称:

企业代表:

企业地址:

兹确认上述公司是按照中小企业技术革新促进法, 国家依法对涉及技术创新成果、以及开发技术商业化 实力等实行评选的技术创新型中小企业(Inno-Biz)。

发证日期: 年月日 有效期至: 年月日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Republic of Korea

(직인) Minister

[별지 제4호 서식]

	처리기간					
	, -	ェ비즈 확인서 재발급 -			7일	
신	업체명	(국문)	사업자번호			
		(영문)	법인번호			
	대표자	(국문) (영문)	생년월일(남/여)			
	담당자	직위	휴대폰			
청		성명	E-mail			
인		본사 □□□-□□□		전 호	}	
	주 소	(국문) (영문)		FAX		
		공장 □□□-□□□		전 호	}	
				FAX		
	no-Biz		(유효기간 :		~)	
확인	<u></u>		<u> </u>		,	
		변 경 1	귀 용			
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체명					
다	표자					
주	소					
7]1	타사유					
상기와 같이 이노비즈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수수료						
○ 업체명, 대표자, 주소 변경 또는 Inno-Biz 확인서 분실의 경우 - Inno-Biz 확인서 원본 1부(단, 분실 사유 시는 제외)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이노비즈 선정기업의 인수·합병의 경우
 - Inno-Biz 확인서 원본 1부
 - 기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공증) 사본 1부
 - * 개인기업의 대표자, 장비·시설, 기술혁신 역량 등이 인증수준 유지하에서 법인전환시는 공증생략 가능
 - 법인 등기부등본(임원사항 기록) 1부 등

A4용지 210×297mm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개정 이력

- 1. 2008년 12월 29일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179호
- 2. 2009년 12월 01일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164호
- 3. 2010년 04월 27일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0-084호
- 4. 2014년 07월 14일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036호 (제정)
- 5. 2015년 12월 16일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065호 (개정)
- 6. 2016년 08월 01일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043호 (개정)
- 7. 2017년 08월 29일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05호 (개정)
- 8. 2018년 01월 09일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04호 (개정)
- 9. 2021년 03월 05일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16호 (개정)
- 10. 2022년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8 - 179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정 공고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중 소 기 업 청 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이노비즈"라 함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의거 중소기업 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말한다.
- 2. "업력"이라 함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일로부터 이노비즈 선정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때 휴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3. "평가기관"이라 함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말한다.
- 4. "이노비즈넷"이라 함은 이노비즈를 선정·관리하고, 이들 기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구축한 종합정보망을 말한다.
- 5. "자가진단"은 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이노비즈 통합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해당되는 업종의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에 따라 스스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 6. "기업합병"이라 함은 두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 멸되면서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 사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7. "중소기업통합"이라 함은 개인중소기업 간의 통합 또는 개인중소기업 과 법인중소기업 간의 통합방식에 의해 법인중소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8. "회사분할"이라 함은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9. "조직변경"이라 함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 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한다.
- 10. "운영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노비즈넷의 관리 · 운영을 위탁받은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지칭한다.
- 제3조(이노비즈 신청대상) ①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다.
 - 1.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C")
 - 2.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F")
 - 3. 농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A01")
 - 4. 비제조업(제조업, 건설업, 농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
 - 5. 소프트웨어업

업 종	산업분류코드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1
기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1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J6 2 010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J62021

6. 바이오업(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표」중 바이오산업 적용가능 업 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 7. 환경업(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련기술을 이용하여 오염 저감시설 및 기기 등을 설계, 제작, 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표」중 환경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 8. 전문디자인업(한국표준산업분류-M732)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 1.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3.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 간 기업
- 제4조(업종의 구분) ①이노비즈 신청기업의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 큰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②업종을 전환하는 기업은 실제 영위중인 업종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환하는 업종에 종사할 종업원 수, 생산설비투자 등을 감 안하여 전환하는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③이노비즈 평가지표 적용 시 업종구분은 신청기업의 영위업종 및 평가신청 기술분야에 따라 제3조제1항의 8개업종 중 하나로 분류한다.
-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①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동일업종(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도계 약에 의한 경우을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

- 3.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 4.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 ② 흡수합병의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피합병된 기업의 업력을 흡수합병한 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피합병된 기업과 흡수합병한 기업의 업종이 동일할 것
 - 2.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의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의 50%이상일 것
 - 3. 피합병기업의 상근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합병 후 기업의 상근이사로 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 ③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1.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 2.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설기업과 업종이 동일한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 ④ 회사분할의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1. 기존기업의 영업실적이 분리 확인될 것
 - 2. 기존기업 또는 기존기업의 과점주주가 분할 후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 ⑤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흡수통합의 경우에는 제2항을,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하여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1. 통합 후 법인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통합 전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하고 통합 전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통합 전 양기업의 업종을 동시영위 포함)할 것
 -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설립·존속되는 법인의 주주일 것
- 3.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과점주주의 개인사업을 승계하는 것이 아닐 것
- ⑥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 법인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제6조 (이노비즈 평가기준) ①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2의 기술혁신평가시스템 평가지표와 평가기관이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고시한 기술평가표로 한다. 다만, 평가기관은 기술평가표를 이노비즈넷에 고시 또는 개정고시하기 전에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평가지표, 운영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②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3의 기술·경영진단평 가표로 한다.
- 제7조 (이노비즈 신청) ①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 이라 한다.)이 이노비즈넷의 신청절차에 따라 가입을 위한 일반현황, 재무상태 등을 입력하고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기관이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기술평가신청서 및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이를 이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한다.
 - ②제1항의 신청절차 중 신청기업의 자가진단 실시결과 평가점수가 65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8조(현장평가 등) ①제7조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받은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이 제3조에 따른 신청자격을 구비하고 평가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평가 3일 전까지 평가일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준비할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 납부할수수료 등을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별표 2에 따른 기술혁신시스템 해당 업종의 평가지표 및 제6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고시한 기술평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③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위하여 신청기업의 업종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평가자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 ④평가기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현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절차, 세부 평가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신청취소 등) ①신청기업이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 실시 전에 기업의 내부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현장평가를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평가기관에 이노비즈 신청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신청의 취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수용하여 신청기업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이노비즈넷에 입력한 정보를 삭제하 거나 평가기관에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 이 신청취소 후 재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를 삭제하거 나 제출서류를 반려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현장평가업무 처리기간) ①평가기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 과를 이노비즈넷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리기간은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21일로 한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8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신청기업에게 통지한 평가일 전일까지 평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통지한 평가일로부터 평가수수료 납부일까지의 기간
 - 2. 제8조 제1항의 평가계획을 통지한 후 신청기업이 평가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평가기관에 요청한 경우, 통지한 평가일로부터 신청기업의 요청에 따라 연기한 날까지의 기간
- 제11조(이노비즈 선정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이고, 기술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기업에 대하여 이노비즈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은 평가기관이평가결과를 등록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 ②평가기관은 평가결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업에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기업으로부터 평가결과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 제12조(확인서 발급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확인서의 발급·교부에 관한 업무는 해당 신청기업의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장(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본사가 있는 신청기업의 경우에는 제주시험연구센터장, 이하 "지방중소기업청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 ②확인서 발급지역은 기업의 본사를 기준으로 하며, 확인서의 발급번호는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다.
 - 1. 확인서의 발급번호는 8단위(0000-0000)로 부여한다.
 - 2. 앞부분 4단위 중 첫째 자리는 발급년도, 둘째자리와 셋째자리는 발급지역, 넷재자리는 평가지표를 의미하며 다음 각목에서 정한 표기방법 및 표기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 가. 발급년도 표기방법 : 발급연도의 마지막 자리(예 : 2008년의 경우 "8"로 표기) 숫자로 표기
 - 나. 발급지역의 표기기준 : 서울은 01, 부산·울산은 02, 대구·경북은 03, 광주·전남은 04, 대전·충남은 05, 경기는 06, 인천은 07, 강원은 08, 충북은 09, 전북은 10, 경남은 11, 제주는 12로 표기
 - 다. 평가지표 표기기준 : 제조업은 1, 비제조업은 2, 소프트웨어업은 3, 환경업은 4, 바이오산업은 5, 건설업은 6, 전문디자인업은 7, 농업은 8로 표기
 - 3. 뒷부분 4단위는 발급지역, 평가지표와 관계없이 매 연도별로 확인서를 발급한 순서에 따라 이노비즈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번호를 부여한다.
 - ③등급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에 따라 부여한다.
 - 1.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 800점 미만인 경우 "A" 등급
 - 2. 평가점수가 800점 이상 900점 미만인 경우 "AA" 등급
 - 3. 평가점수가 900점 이상인 경우 "AAA" 등급
 - ④유효기간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제13조(영문확인서 발급) ①이노비즈 선정기업은 영문 확인서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노비즈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노비즈 영문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영문은 대문자로 명기하여야한다.

- 제14조(확인서의 재발급) ①이노비즈로 지정된 기업 중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1. 상호,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 2. 확인서의 분실·훼손 등의 경우
 -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수·합병, 통합, 조직변경 등을 사유로 이노 비즈 선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 ②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 받은 지방 중소기업청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재발급 할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확인서의 본문 아래 부분에 재발급 사유 및 재발급 일자를 명기하여야 하며, 소재 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확인서 번호의 지역코드를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③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제15조(선정의 승계)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노비즈 선정의 승계가 가능하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확인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 1.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고 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호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2. 이노비즈기업이 이노비즈기업 또는 이노비즈가 아닌 기업과 흡수 합병하는 경우 한하여 승계할 수 있다. 단, 합병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가아닌 기업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3. 이노비즈기업이 이노비즈기업 또는 이노비즈가 아닌 기업과 신설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이노비즈인 경우
 - 4.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제5조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단, 흡수통합의 경우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호규정을 준용하여 승계 가능여부를 결정한다.)
 - 5.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을 변경한 경우

- 제16조(유효기간의 연장) ①평가기관은 이노비즈 선정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사실을 유효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 연장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술·경영진단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유효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이노비즈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기업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기업으로 하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일까지 확인서를 갱신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⑤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⑥유효기간 연장에 의한 확인서의 갱신발급은 최초 발급된 확인서의 번호를 그대로 부여하고, 확인서 번호의 앞쪽에 R표기를 더하여 신규지정과 구별되게 한다.
- 제17조(사후관리)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노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기술혁신시스템 운영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 제18조(선정취소) ①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제주시험지원센터장은 이노비즈 선정기업에 다음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기업에 대하여 이노비즈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선정기업이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
 - 2.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
 - 3. 제3조에 따른 이노비즈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
 - 4. 휴폐업, 조업중단, 금융규제, 국세체납 등으로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한 경우
 - 5. 기타 제17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평가기관은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를 발견할 경우 해당기업을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취소하였을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15일 이내에 해당기업의 확인서를 반납 받아야 하며, 해당기업이 확인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그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9조(평가수수료 등) ①평가기관은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평가수수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기업이 부담하도록할 수 있다. 다만, 평가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하되 신청기업이부담한다.
 - 1. 제7조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의 경우에는 70만원을 평가수수료로 한다.
 - 2. 제16조에 따른 선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현장평가의 경우에는 40 만원을 평가수수료로 한다.
 - ②평가수수료를 납부하고 현장평가를 진행한 경우에 신청기업은 평가수수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 제20조(이노비즈 선정 관련정보 관리)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노비즈 확인서 발급현황, 대표자·상호·소재지 등의 변경에 따른 확인서 재발급, 이노비즈 선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확인서 갱신발급, 인노비즈 선정 취소 등의 경우 이노비즈넷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 제21조 (이노비즈 정보관리) ①운영기관은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자가진단, 현장평가, 사후관리 등의 현황을 관리기관, 평가기관 및 해당기업이 수시 로 선정이 가능하도록 이노비즈넷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 ②운영기관은 이노비즈 통계현황 등을 매월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이 운영규정이 시행 당시 법 제15조 및 영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청장, 지방중소기업청장, 평가기관, 운영기관의 행위는 이 운영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 지방중소기업청장, 평가기관, 운영기관의 행위로 본다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9-164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공고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중 소 기 업 청 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 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이노비즈"라 함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의거 중소기업 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말한다.
- 2. "업력"이라 함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일로부터 이노비즈 선정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때 휴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3. "평가기관"이라 함은 기술보증기금을 말한다.
- 4. "이노비즈넷"이라 함은 이노비즈를 선정·관리하고, 이들 기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구축한 종합정보망(www.innobiz.net)을 말한다.
- 5. "자가진단"은 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이노비즈 통합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해당되는 업종의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에 따라 스스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 6. "기업합병"이라 함은 두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 멸되면서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 사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7. "중소기업통합"이라 함은 개인중소기업 간의 통합 또는 개인중소기업과 법인중소기업 간의 통합방식에 의해 법인중소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8. "회사분할"이라 함은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9. "조직변경"이라 함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 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한다.
- 10. "관리기관"이라 함은 이노비즈 평가지표 개발, 제도개선, 이노비즈넷 관리·운영 등 이노비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써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지칭한다.
- 제3조(이노비즈 신청대상) ①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 인 기업으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다.
 - 1.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C")
 - 2.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F")
 - 3. 농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A01")
 - 4. 비제조업(제조업, 건설업, 농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
 - 5. 소프트웨어업

업 종	산업분류코드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 2 11
기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1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J6 2 010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J62021

6. 바이오업(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표」중 바이오산업 적용가능 업 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 7. 환경업(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련기술을 이용하여 오염 저감시설 및 기기 등을 설계, 제작, 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표」중 환경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 8. 전문디자인업(한국표준산업분류-M732)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 1.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3.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 간 기업
- 4.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제4조(업종의 구분) ①이노비즈 신청기업의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 큰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②업종을 전환하는 기업은 실제 영위중인 업종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환하는 업종에 종사할 종업원 수, 생산설비투자 등을 감 안하여 전환하는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③이노비즈 평가지표 적용 시 업종구분은 신청기업의 영위업종 및 평가신청 기술분야에 따라 제3조제1항의 8개업종 중 하나로 분류한다.
-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①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동일업종(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도계 약에 의한 경우을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
- 3.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 4.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 ② 흡수합병의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피합병된 기업의 업력을 흡수합병한 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피합병된 기업과 흡수합병한 기업의 업종이 동일할 것
 - 2.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의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의 50%이상일 것
 - 3. 피합병기업의 상근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합병 후 기업의 상근이사로 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 ③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1.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 2.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설기업과 업종이 동일한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 ④ 회사분할의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1. 기존기업의 영업실적이 분리 확인될 것
 - 2. 기존기업 또는 기존기업의 과점주주가 분할 후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 ⑤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흡수통합의 경우에는 제2항을,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하여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1. 통합 후 법인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통합 전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하고 통합 전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통합 전 양기업의 업종을 동시영위 포함)할 것
 -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설립·존속되는 법인의 주주일 것

- 3.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과점주주의 개인사업을 승계하는 것이 아닐 것 ⑥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 법인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제6조(이노비즈 평가기준) ①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3의 기술혁신평가시스템 평가지표와 평가기관이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고시한 기술평가표로 한다. 다만, 평가기관은 기술평가표를 이노비즈넷에 고시 또는 개정고시하기 전에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평가지표, 운영방법 등을 혐의하여야 한다.
 - ②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4의 기술경영진단평가표로 한다.
- 제7조(이노비즈 신청) ①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 이라 한다.)이 이노비즈넷의 신청절차에 따라 가입을 위한 일반현황, 재무상태 등을 입력하고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기관이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이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한다.
 - ②제1항의 신청절차 중 신청기업의 자가진단 실시결과 평가점수가 65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8조(현장평가 등) ①제7조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받은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이 제3조에 따른 신청자격을 구비하고 평가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평가 3일 전까지 평가일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준비할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 납부할수수료 등을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별표 3에 따른 기술혁신시스템 해당 업종의 평가지표 및 제6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고시한 기술평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③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위하여 신청기업의 업종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평가자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해당 신청기업의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직원(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본사가 있는 신청기업의 경우에는 제주시험연구센터 직원)이 참여할수 있다.

- ④평가기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현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절차, 세부 평가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신청취소 등) ①신청기업이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 실시 전에 기업의 내부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현장평가를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평가기관에 이노비즈 신청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신청의 취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수용하여 신청기업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이노비즈넷에 입력한 정보를 삭제하 거나 평가기관에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 이 신청취소 후 재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를 삭제하거 나 제출서류를 반려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현장평가업무 처리기간) ①평가기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 과를 이노비즈넷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리기간은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21일로 한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8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신청기업에게 통지한 평가일 전일까지 평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통지한 평가일로부터 평가수수료 납부일까지의 기간
 - 2. 제8조 제1항의 평가계획을 통지한 후 신청기업이 평가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평가기관에 요청한 경우, 통지한 평가일로부터 신청기업의 요청에 따라 연기한 날까지의 기간
- 제11조(이노비즈 선정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이고, 기술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이노비즈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은 평가기관이 평가결과를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 ②평가기관은 평가결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업에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기업으로부터 평가결과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 제12조(확인서 발급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확인서의 발급·교부 에 관한 업무는 해당 신청기업의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장(제주특 별자치도 지역에 본사가 있는 신청기업의 경우에는 제주시험연구센터 장, 이하 "지방중소기업청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 ②확인서 발급지역은 기업의 본사를 기준으로 하고, 확인서 발급명의는 "중소기 업청장"으로 하며, 확인서의 발급번호는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다.
 - 1. 확인서의 발급번호는 11단위(000000-00000)로 부여한다.
 - 2. 앞부분 6단위 중 첫째·둘째자리는 발급년도, 셋째·넷째자리는 발급지역, 다섯째·여섯째자리는 평가지표를 의미하며 다음 각목에서 정한 표기방법 및 표기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 가. 발급년도 표기방법 : 발급연도의 마지막 2자리(예 : 2008년의 경우 "08"로 표기) 숫자로 표기
 - 나. 발급지역의 표기기준 : 서울은 01, 부산·울산은 02, 대구·경북은 03, 광주·전남은 04, 대전·충남은 05, 경기는 06, 인천은 07, 강원은 08, 충북은 09, 전북은 10, 경남은 11, 제주는 12로 표기
 - 다. 평가지표 표기기준 : 제조업은 01, 비제조업은 02, 소프트웨어업은 03, 환경업은 04, 바이오산업은 05, 건설업은 06, 전문디자인업은 07, 농업은 08로 표기
 - 3. 뒷부분 5단위는 발급지역, 평가지표와 관계없이 매 연도별로 확인서를 발급한 순서에 따라 이노비즈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번호를 부여한다.
 - ③등급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에 따라 부여한다.
 - 1.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 800점 미만인 경우 "A" 등급
 - 2. 평가점수가 800점 이상 900점 미만인 경우 "AA" 등급
 - 3. 평가점수가 900점 이상인 경우 "AAA" 등급
 - ④유효기간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제13조(영문확인서 발급) ①이노비즈 선정기업은 영문 확인서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노비즈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노비즈 영문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영문은 대문자로 명기하여야한다.
- 제14조(확인서의 재발급) ①이노비즈로 지정된 기업 중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1. 상호,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 2. 확인서의 분실·훼손 등의 경우
 -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수·합병, 통합, 조직변경 등을 사유로 이노 비즈 선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 ②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 받은 지방 중소기업청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재발급 할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확인서의 본문 아래 부분에 재발급 사유 및 재발급 일자를 명기하여야 하며, 소재지 가 이전된 경우에는 확인서 번호의 지역코드를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제15조(선정의 승계)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노비즈 선정의 승계 가 가능하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확인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 1.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고 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호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2. 이노비즈기업이 이노비즈기업 또는 이노비즈가 아닌 기업과 흡수 합병하는 경우 한하여 승계할 수 있다. 단, 합병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가아닌 기업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3. 이노비즈기업이 이노비즈기업 또는 이노비즈가 아닌 기업과 신설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이노비즈인 경우

- 4.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제5조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단, 흡수통합의 경우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호규정을 준용하여 승계 가능여부를 결정한다.)
- 5.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을 변경한 경우
- 제16조(유효기간의 연장) ①평가기관은 이노비즈 선정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사실을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유효기간 만료 35일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 연장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술·경영진단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유효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이노비즈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기업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기업으로 하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일까지 확인서를 갱신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⑤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⑥유효기간 연장에 의한 확인서의 갱신발급은 최초 발급된 확인서의 번호를 그대로 부여하고, 확인서 번호의 앞쪽에 R표기를 더하여 신규지정과 구별되게 한다.
- 제17조(사후관리)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노비즈 선 정기업에 대하여 기술혁신시스템 운영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 제18조(선정취소) ①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제주시험지원센터장은 이노비 즈 선정기업에 다음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기업에 대하여 이노비즈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선정기업이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

- 2.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
- 3. 제3조에 따른 이노비즈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
- 4. 휴폐업, 조업중단, 금융규제, 국세체납 등으로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한 경우
- 5. 기타 제17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평가기관은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를 발견 할 경우 해당기업을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취소하였을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15일 이내에 해당기업의 확인서를 반납 받아야 하며, 해당기업이 확인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그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9조(평가수수료 등) ①평가기관은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평가수수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기업이 부담하도록할 수 있다. 다만, 평가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하되 신청기업이부담한다.
 - 1. 제7조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의 경우에는 70만원을 평가수수료로 한다.
 - 2. 제16조에 따른 선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현장평가의 경우에는 40 만원을 평가수수료로 한다.
 - ②평가수수료를 납부하고 현장평가를 진행한 경우에 신청기업은 평가수수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 제20조(이노비즈 선정 관련정보 관리)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노비즈 확인서 발급현황, 대표자·상호·소재지 등의 변경에 따른 확인서 재발급, 이노비즈 선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확인서 갱신발급, 이노비즈 선정 취소 등의 경우 이노비즈넷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 제21조(이노비즈 정보관리) ①관리기관은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자가진단, 현장평가, 사후관리 등의 현황을 관리기관, 평가기관 및 해당기업이 수시 로 선정이 가능하도록 이노비즈넷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 ②관리기관은 이노비즈 통계현황 등을 매월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8-179호, 2008.12.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운영규정이 시행 당시 법 제15조 및 영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청장, 지방중소기업청장, 평가기관, 관리기관의 행위는 이 운영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 지방중소기업청장, 평가기관, 관리기관의 행위로 본다.

부 칙

<제2009-164호, 2009.1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이노비즈를 신청한 기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유효기간 만기도래하여 연장 신청하는 기업은 개정 규정에 따른다.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0-84 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공고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7일 중 소 기 업 청 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 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이노비즈"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말한다.
- 2. "업력"이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로부터, 법 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일로부터 이노비즈 선정 신청 일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때 휴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3. "평가기관"이란 기술보증기금을 말한다.
- 4. "이노비즈넷"이란 이노비즈를 선정·관리하고, 이들 기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구축한 종합정보망(www.innobiz.net)을 말한다.
- 5. "자가진단"은 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이노비즈 통합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해당되는 업종의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에 따라 스스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 6. "기업합병"이란 두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되면서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7. "중소기업통합"이란 개인중소기업 간의 통합 또는 개인중소기업과 법인 중소기업 간의 통합방식에 의해 법인중소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8. "회사분할"이란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9.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한다.
- 10. "관리기관"이란 이노비즈 평가지표 개발, 제도개선, 이노비즈넷 관리 · 운영 등 이노비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써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지칭한다.
- 제3조(이노비즈 신청대상) ①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다.
 - 1.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C")
 - 2.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F")
 - 3. 농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A01")
 - 4. 비제조업(제조업, 건설업, 농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
 - 5. 소프트웨어업

업 종	산업분류코드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1
기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1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J62010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J62021

6. 바이오업(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표」중 바이오산업 적용가능 업 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 7. 환경업(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련기술을 이용하여 오염 저감시설 및 기기 등을 설계, 제작, 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표」중 환경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 8. 전문디자인업(한국표준산업분류-M732)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 1.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3.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4.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제4조(업종의 구분) ①이노비즈 신청기업의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 큰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②업종을 전환하는 기업은 실제 영위중인 업종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환하는 업종에 종사할 종업원 수, 생산설비투자 등을 감 안하여 전환하는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③이노비즈 평가지표 적용 시 업종구분은 신청기업의 영위업종 및 평가신청 기술분야에 따라 제3조제1항의 8개업종 중 하나로 분류한다.
-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①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동일업종(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도계 약에 의한 경우을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

- 3.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 4.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 ② 흡수합병의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피합병된 기업의 업력을 흡수합병한 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피합병된 기업과 흡수합병한 기업의 업종이 동일할 것
 - 2.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의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의 50%이상일 것
 - 3. 피합병기업의 상근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합병 후 기업의 상근이사로 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 ③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1.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 2.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설기업과 업종이 동일한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 ④ 회사분할의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1. 기존기업의 영업실적이 분리 확인될 것
 - 2. 기존기업 또는 기존기업의 과점주주가 분할 후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 ⑤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흡수통합의 경우에는 제2항을,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하여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1. 통합 후 법인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통합 전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하고 통합 전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통합 전 양기업의 업종을 동시영위 포함)할 것
 -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설립·존속되는 법인의 주주일 것
- 3.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과점주주의 개인사업을 승계하는 것이 아닐 것
- ⑥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 법인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제6조(이노비즈 평가기준) ①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3의 기술혁신평가시스템 평가지표와 평가기관이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고시한 기술평가표로 한다. 다만, 평가기관은 기술평가표를 이노비즈넷에 고시 또는 개정고시하기 전에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평가지표, 운영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②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4의 기술·경영진단평 가표로 한다.
- 제7조(이노비즈 신청) ①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 이라 한다.)이 이노비즈넷의 신청절차에 따라 가입을 위한 일반현황, 재무상태 등을 입력하고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기관이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이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한다.
 - ②제1항의 신청절차 중 신청기업의 자가진단 실시결과 평가점수가 65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기업이 이노비즈로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업은 벤처기업확인요령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보증기업"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현장평가 등) ①제7조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받은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이 제3조에 따른 신청자격을 구비하고 평가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평가 3일 전까지 평가일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준비할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 납부할수수료 등을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별표 3에 따른 기술혁신시스템 해당 업종의 평가지표 및 제6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고시한 기술평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을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동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현장평가시 벤처기업확인

요령 제6조에 따른 기술성·사업성 평가(이하 "벤처기업 평가"라 한다)항 목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는 벤처기업 평가 결과를 준용한다.

③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위하여 신청기업의 업종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평가자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해당 신청기업의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직원(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본사가 있는 신청기업의 경우에는 제주시험연구센터 직원)이 참여할수 있다.

④평가기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현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절차, 세부 평가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신청취소 등) ①신청기업이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 실시 전에 기업의 내부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현장평가를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평가기관에 이노비즈 신청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신청의 취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수용하여 신청기업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이노비즈넷에 입력한 정보를 삭제하 거나 평가기관에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 이 신청취소 후 재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를 삭제하거 나 제출서류를 반려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현장평가업무 처리기간) ①평가기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 과를 이노비즈넷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리기간은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21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신청기업에게 통지한 평가일 전일까지 평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통지한 평가일로부터 평가수수료 납부일까지의 기간

- 2. 제8조 제1항의 평가계획을 통지한 후 신청기업이 평가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평가기관에 요청한 경우, 통지한 평가일로부터 신청기업의 요청에 따라 연기한 날까지의 기간
- 제11조(이노비즈 선정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이고, 기술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이노비즈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은 평가기관이 평가결과를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 ② 평가기관은 제7조제3항에 의거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기업이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로 선정된 경우 "보증결정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평가기관은 평가결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업에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기업으로부터 평가결과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 제12조(확인서 발급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확인서의 발급·교부에 관한 업무는 해당 신청기업의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장(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본사가 있는 신청기업의 경우에는 제주시험연구센터장, 이하 "지방중소기업청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 ②확인서 발급지역은 기업의 본사를 기준으로 하고, 확인서 발급명의는 "중소기업청장"으로 하며, 확인서의 발급번호는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다.
 - 1. 확인서의 발급번호는 11단위(000000-00000)로 부여한다.
 - 2. 앞부분 6단위 중 첫째·둘째자리는 발급년도, 셋째·넷째자리는 발급지역, 다섯째·여섯째자리는 평가지표를 의미하며 다음 각목에서 정한 표기방법 및 표기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 가. 발급년도 표기방법 : 발급연도의 마지막 2자리(예 : 2008년의 경우 "08"로 표기) 숫자로 표기
 - 나. 발급지역의 표기기준 : 서울은 01, 부산·울산은 02, 대구·경북은 03, 광주·전남은 04, 대전·충남은 05, 경기는 06, 인천은 07, 강원은 08, 충북은 09, 전북은 10, 경남은 11, 제주는 12로 표기

- 다. 평가지표 표기기준 : 제조업은 01, 비제조업은 02, 소프트웨어업은 03, 환경업은 04, 바이오산업은 05, 건설업은 06, 전문디자인업은 07, 농업은 08로 표기
- 3. 뒷부분 5단위는 발급지역, 평가지표와 관계없이 매 연도별로 확인서 를 발급한 순서에 따라 이노비즈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번호를 부여한다.
- ③등급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에 따라 부여한다.
 - 1.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 800점 미만인 경우 "A" 등급
 - 2. 평가점수가 800점 이상 900점 미만인 경우 "AA" 등급
 - 3. 평가점수가 900점 이상인 경우 "AAA" 등급
- ④유효기간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제13조(영문확인서 발급) ①이노비즈 선정기업은 영문 확인서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노비즈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노비즈 영문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영문은 대문자로 명기하여야한다.
- 제14조(확인서의 재발급) ①이노비즈로 지정된 기업 중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1. 상호,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 2. 확인서의 분실·훼손 등의 경우
 -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수·합병, 통합, 조직변경 등을 사유로 이노 비즈 선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 ②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 받은 지방 중소기업청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재발급 할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확인서의 본문 아래 부분에 재발급 사유 및 재발급 일자를 명기하여야 하며, 소재 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확인서 번호의 지역코드를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④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제15조(선정의 숭계)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노비즈 선정의 승계가 가능하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확인서를 재발급할 수있다.
 - 1.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고 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호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2. 이노비즈기업이 이노비즈기업 또는 이노비즈가 아닌 기업과 흡수 합병하는 경우 한하여 승계할 수 있다. 단, 합병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가 아닌 기업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3. 이노비즈기업이 이노비즈기업 또는 이노비즈가 아닌 기업과 신설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이노비즈인 경우
 - 4.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제5조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단, 흡수통합의 경우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호규정을 준용하여 승계 가능여부를 결정한다.)
 - 5.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을 변경한 경우
- 제16조(유효기간의 연장) ①평가기관은 이노비즈 선정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사실을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유효기간 만료 35일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 연장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술·경영진단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유효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이노비즈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한다. 다만,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요 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현장평가시 벤처기업 평가 항목 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는 벤처기업 평가 결과를 준용한다.

- ③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기업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기업으로 하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일까지 확인서를 갱신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④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유효기간 연장에 의한 확인서의 갱신발급은 최초 발급된 확인서의 번호를 그대로 부여하고, 확인서 번호의 앞쪽에 R표기를 더하여 신규지정과 구별되게 한다.
- 제17조(사후관리)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노비즈 선 정기업에 대하여 기술혁신시스템 운영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 제18조(선정취소) ①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제주시험지원센터장은 이노비 즈 선정기업에 다음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기업에 대하여 이노비즈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선정기업이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
 - 2.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
 - 3. 제3조에 따른 이노비즈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
 - 4. 휴폐업, 조업중단, 금융규제, 국세체납 등으로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한 경우
 - 5. 기타 제17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평가기관은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를 발견 할 경우 해당기업을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취소하였을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15일 이내에 해당기업의 확인서를 반납 받아야 하며, 해당기업이 확인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그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9조(평가수수료 등) ①평가기관은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평가수수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기업이 부담하도록할 수 있다. 다만, 평가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하되 신청기업이부담한다.
 - 1. 제7조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의 경우에는 70만원을 평가수수료로 한다.
 - 2. 제8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에 의해 벤처기업 평가 결과를 준용한 경우 평가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다.
 - 3. 제16조에 따른 선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현장평가의 경우에는 40 만원을 평가수수료로 한다.
 - ②평가수수료를 납부하고 현장평가를 진행한 경우에 신청기업은 평가수수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 제20조(이노비즈 선정 관련정보 관리)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노비즈 확인서 발급현황, 대표자·상호·소재지 등의 변경에 따른 확인서 재발급, 이노비즈 선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확인서 갱신발급, 이노비즈 선정 취소 등의 경우 이노비즈넷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 제21조(이노비즈 정보관리) ①관리기관은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자가진단, 현장평가, 사후관리 등의 현황을 관리기관, 평가기관 및 해당기업이 수시로 선정이 가능하도록 이노비즈넷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 ②관리기관은 이노비즈 통계현황 등을 매월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부 칙

<제2008-179호, 2008.12.29>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이 운영규정이 시행 당시 법 제15조 및 영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청장, 지방중소기업청장, 평가기관, 관리기관의 행위는 이 운영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 지방중소기업청장, 평가기관, 관리기관의 행위로 본다.

부 칙

<제2009-164호, 2009.12.1>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이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이노비즈를 신청한 기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유효기간 만기도래하여 연장 신청하는 기업은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10-84호, 2010.4.27>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이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이노비즈를 신청 및 유효기간 만기도래하여 연장 신청하는 기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중소기업청 고시 제 2014-36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 2014년 7월 14일 중소기업청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정 2014. 7. 1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3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이노비즈"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말한다.
- 2. "업력"이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로부터, 법인 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일로부터 이노비즈 선정 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때 휴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3. "평가기관"이란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기술보증기금을 말한다.
- 4. "이노비즈넷"이란 이노비즈를 선정·관리하고, 이들 기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구축한 종합정보망(www.innobiz.net)을 말한다.
- 5. "자가진단"은 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이노비즈 넷에 구축된 해당 업종의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에 따라 스스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 6. "기업합병"이란 두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되면서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7. "중소기업통합"이란 개인중소기업 간의 통합 또는 개인중소기업과 법인 중소기업 간의 통합방식에 의해 법인중소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8. "회사분할"이란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9.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한다.
- 10. "관리기관"이란 이노비즈 평가지표 개발, 제도개선, 이노비즈넷 관리 · 운영 등 이노비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이노비즈 신청대상) ① 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다.
 - 1.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C")
 - 2.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F")
 - 3. 농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A01")
 - 4. 비제조업(제조업, 건설업, 농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
 - 5. 소프트웨어업

업 종	산업분류코드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1
기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1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J62010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J62021

- 6. 바이오업(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 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표」중 바이오산업 적용가능 업 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 7. 환경업(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련기술을 이용하여 오염 저감시설 및 기기 등을 설계, 제작, 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 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표」중 환경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 8. 전문디자인업(한국표준산업분류-M732)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 1.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3.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 간 기업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 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 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 4.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제4조(업종의 구분) ① 이노비즈 신청기업의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 큰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② 업종을 전환하는 기업은 실제 영위중인 업종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환하는 업종에 종사할 종업원 수, 생산설비투자 등을 감안하여 전환하는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이노비즈 평가지표 적용 시 업종구분은 신청기업의 영위업종 및 평가신청 기술분야에 따라 제3조제1항의 업종 중 하나로 분류한다.
-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 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도계 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
- 3.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 4.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 ② 흡수합병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피합병된 기업의 업력을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피합병된 기업과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종이 동일할 것
 - 2.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 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의 50%이상일 것
 - 3. 피합병기업의 상근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합병 후 기업의 상근이사로 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 ③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1.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 2.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설기업과 업종이 동일한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 ④ 회사분할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1. 기존기업의 영업실적이 분리 확인될 것
 - 2. 기존기업 또는 기존기업의 과점주주가 분할 후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 ⑤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흡수 통합의 경우에는 제2항을,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하여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1. 통합 후 법인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통합 전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하고 통합 전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통합 전 양기업의 업종을 동시영위 포함)할 것
 -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설립·존속되는 법인의 주주일 것

- 3.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과점주주의 개인사업을 승계하는 것이 아닐 것
- ⑥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 법인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제6조(이노비즈 평가기준) ①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3의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와 평가기관이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고시한 기술 평가표로 한다. 다만, 평가기관은 기술평가표를 이노비즈넷에 고시 또는 개정고시하기 전에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평가지표, 운영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4의 기술·경영진단 평가표로 한다.
- 제7조(이노비즈 신청) ① 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 이라 한다)이 이노비즈넷의 신청절차에 따라 일반현황, 재무상태 등을 입력하고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기관이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이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절차 중 신청기업의 자가진단 실시결과 평가점수가 650점 이상 인 경우에 한하여 이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기업이 이노비즈로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업은 벤처기업확인요령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보증기업"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현장평가 등) ① 제7조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받은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이 제3조에 따른 신청자격을 구비하고 평가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평가 7일 전까지 평가일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준비할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 납부할 수수료 등을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평가일은 신청기업과 평가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별표 3에 따른 기술혁신시스템 해당 업종의 평가지표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고시한 기술평가표에 따

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동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현장평가시 벤처기업확인요령제6조에 따른 기술성·사업성 평가(이하 "벤처기업 평가"라 한다)항목을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는 벤처기업 평가결과를 준용한다.

- 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위하여 신청기업의 업종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평가자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해당 신청기업의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직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평가단은 현장평가 장소에 신청기업 소속이 아닌 자의 출입을 제한할수 있다.
- ④ 평가기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현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절차, 세부 평가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 시할 수 있다.
- 제9조(신청취소 등) ① 신청기업이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 실시 전에 기업의 내부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현장평가를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평가기관에 이노비즈 신청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의 취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기업이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이노비즈넷에 입력한 정보 및 평가기관이 신청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수용하여 신청기업이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이노비즈넷에 입력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평가기관에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신청취소 후 재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를 삭제하거나 제출서류를 반려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현장평가업무 처리기간) ① 평가기관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노비 즈 선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노비즈넷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리기간은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21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8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신청기업에게 통지한 평가일 전일까지 평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통지한 평가일로부터 평가수수료 납부일까지의 기간
 - 2. 제8조제1항의 평가계획을 통지한 후 신청기업이 평가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평가기관에 요청한 경우, 통지한 평가일로부터 신청기업의 요청에 따라 연기한 날까지의 기간
- 제11조(이노비즈 선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기술 혁신시스템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이고, 기술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이노비즈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은 평가기관이 평가결과를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 ② 평가기관은 제7조제3항에 의거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기업이 제1 항에 따라 이노비즈로 선정된 경우 "보증결정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평가기관은 평가결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업에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기업으로부터 평가결과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 제12조(확인서 발급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이노비즈 영문확인서(이하 "영문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확인서의 발급·교부에 관한 업무는 해당 신청기업의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한다. 단, 영문확인서의 업체명, 대표자, 주소는 대문자로 명기하고, 영문 성명은 여권정보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확인서 발급지역은 기업의 본사를 기준으로 하고, 확인서 발급명의는 "중소기업청장"으로 하며, 확인서의 발급번호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다.

- 1. 확인서의 발급번호는 11단위(000000-00000)로 부여한다.
- 2. 앞부분 6단위 중 첫째·둘째자리는 발급년도, 셋째·넷째자리는 발급지역, 다섯째·여섯째자리는 평가지표를 의미하며 다음 각목에서 정한 표기방법 및 표기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 가. 발급년도 표기방법 : 발급년도의 마지막 2자리(예 : 2014년의 경우 "14"로 표기) 숫자로 표기
 - 나. 발급지역의 표기기준 : 서울은 01, 부산·울산은 02, 대구·경북은 03, 광주·전남·제주는 04, 대전·충남·세종은 05, 경기는 06, 인천은 07, 강원은 08, 충북은 09, 전북은 10, 경남은 11로 표기
 - 다. 평가지표 표기기준 : 제조업은 01, 비제조업은 02, 소프트웨어업은 03, 환경업은 04, 바이오산업은 05, 건설업은 06, 전문디자인업은 07, 농업은 08로 표기
- 3. 뒷부분 5단위는 발급지역, 평가지표와 관계없이 매 연도별로 확인서를 발급한 순서에 따라 이노비즈넷을 통해 발급번호를 부여한다.
- ③ 등급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한다.
 - 1.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 800점 미만인 경우 "A" 등급
 - 2. 평가점수가 800점 이상 900점 미만인 경우 "AA" 등급
 - 3. 평가점수가 900점 이상인 경우 "AAA" 등급
- ④ 유효기간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제13조(확인서의 재발급) ① 이노비즈로 선정된 기업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1. 상호,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 2. 확인서의 분실·훼손 등의 경우
 -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수·합병, 통합, 조직변경 등을 사유로 이노 비즈 선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 받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재발급할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확인서의 본문 아래 부분에 재발급 사유 및 재발급 일자를 명기하여야 하며,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확인서 번호의 지역코드를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선정의 승계)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노비즈 선정의 승계가 가능하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확인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 1.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2.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인 경우(단,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가 아닌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3.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제5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이노비즈인 경우
 - 4.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제5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단, 흡수통합의 경우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호 규정을 준용하여 승계 가능여부를 결정한다.)
 - 5.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 직을 변경한 경우
- 제15조(유효기간의 연장) ①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선정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사실을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해당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단, 유효기간 만료일이전에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만료 35일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 연장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술·경영진단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평가결과를 신청일부터 21일 이내에 이노비즈넷에 등록하여야 하며,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

- 다. 다만,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현장평가시 벤처기업 평가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는 벤처기업 평가결과를 준용한다.
- ③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기업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기업으로 하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대하여 평가기관이 평가결과를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갱신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 연장기간은 확인서 발급일이기존 유효기간 범위 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익일부터 3년으로 하고, 기존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확인서를 발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 ④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유효기간 연장에 의한 확인서의 갱신발급은 최초 발급된 확인서의 번호를 그대로 부여하고, 확인서 번호의 앞쪽에 R표기를 더하여 신규지 정과 구별되게 한다.
- 제16조(사후관리)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노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기술혁신시스템 운영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 제17조(선정취소)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노비즈 선정기업이 다음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기업에 대하여 이노비즈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선정기업이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
 - 2.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
 - 3. 제3조에 따른 이노비즈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
 - 4. 휴폐업, 조업중단, 금융규제, 국세체납 등으로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한 경우
 - 5. 기타 제16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평가기관은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선정취소 사유를 발견할 경우 해당기업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선정기

- 업이 선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 해당기업을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취소하였을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15일 이내에 해당기업의 확인서를 반납 받아야 하며, 해당기업이 확인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그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8조(평가수수료 등) ① 평가기관은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평가수수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기업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하되 신청기업이 부담한다.
 - 1. 제7조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의 경우에는 70만원을 평가수수료로 한다.
 - 2. 제8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의해 벤처기업 평가 결과를 준용한 경우 평가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다.
 - 3. 제15조에 따른 선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현장평가의 경우에는 40 만원을 평가수수료로 한다.
 - ② 평가수수료를 납부하고 현장평가를 진행한 경우에 신청기업은 평가수수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 제19조(이노비즈 선정 관련정보 관리)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노비즈 확인서 발급현황, 대표자·상호·소재지 등의 변경에 따른 확인서 재발급, 이노비즈 선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확인서 갱신발급, 이노비즈 선정 취소 등의 경우 이노비즈넷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 제20조(이노비즈 정보관리) ①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자가진단, 현장평가, 사후관리 등의 현황을 관리기관, 평가기관 및 해당기업이 수시 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이노비즈넷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 ②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통계현황 등을 매월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세부지침의 제정)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기업 선정·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 업청장과 협의를 거쳐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신청되어 처리 중인 이노비즈 선정 및 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노비즈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4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13일까지로 한다.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65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정 2014. 7. 1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36호 개정 2015. 12. 1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6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이노비즈"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말한다.
- 2. "업력"이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일로부터 이노비즈 선정 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때 휴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3. "평가기관"이란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기술보증기금을 말한다.
- 4. "이노비즈넷"이란 이노비즈를 선정·관리하고, 이들 기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구축한 종합정보망(www.innobiz.net)을 말한다.
- 5. "자가진단"은 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이노비즈 넷에 구축된 해당 업종의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에 따라 스스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 6. "기업합병"이란 두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되면서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7. "중소기업통합"이란 개인중소기업 간의 통합 또는 개인중소기업과 법인 중소기업 간의 통합방식에 의해 법인중소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8. "회사분할"이란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9.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한다.
- 10. "관리기관"이란 이노비즈 평가지표 개발, 제도개선, 이노비즈넷 관리 · 운영 등 이노비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이노비즈 신청대상) ① 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다.
 - 1.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C")
 - 2.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F")
 - 3. 농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A01")
 - 4. 비제조업(제조업, 건설업, 농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
 - 5. 소프트웨어업

업 종	산업분류코드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1
기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1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J62010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J62021

- 6. 바이오업(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 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표」중 바이오산업 적용가능 업 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 7. 환경업(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련기술을 이용하여 오염 저감시설 및 기기 등을 설계, 제작, 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 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산업분류표」중 환경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 8. 전문디자인업(한국표준산업분류-M732)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 1.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3.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 간 기업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 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 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 4.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제4조(업종의 구분) ① 이노비즈 신청기업의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 큰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② 업종을 전환하는 기업은 실제 영위중인 업종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환하는 업종에 종사할 종업원 수, 생산설비투자 등을 감안하여 전환하는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이노비즈 평가지표 적용 시 업종구분은 신청기업의 영위업종 및 평가신청 기술분야에 따라 제3조제1항의 업종 중 하나로 분류한다.
-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 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도계 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

- 3.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 4.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 ② 흡수합병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피합병된 기업의 업력을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피합병된 기업과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종이 동일할 것
 - 2.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 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의 50%이상일 것
 - 3. 피합병기업의 상근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합병 후 기업의 상근이사로 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 ③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1.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 2.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설기업과 업종이 동일한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 ④ 회사분할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1. 기존기업의 영업실적이 분리 확인될 것
 - 2. 기존기업 또는 기존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분할 후 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 ⑤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흡수 통합의 경우에는 제2항을,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하여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1. 통합 후 법인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통합 전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하고 통합 전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통합 전 양기업의 업종을 동시영위 포함)할 것
 -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설립·존속되는 법인의 주주일 것
 - 3.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과점주주의 개인사업을 승계하는 것이 아닐 것
- ⑥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 법인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개인기업의 경우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제6조(이노비즈 평가기준) ①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3의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와 평가기관이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고시한 기술 평가표로 한다. 다만, 평가기관은 기술평가표를 이노비즈넷에 고시 또는 개정고시하기 전에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평가지표, 운영방법 등을 협의 하여야 한다.
 - ②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4의 기술·경영진단 평가표로 한다.
- 제7조(이노비즈 신청) ① 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 이라 한다)이 이노비즈넷의 신청절차에 따라 일반현황, 재무상태 등을 입력하고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기관이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이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절차 중 신청기업의 자가진단 실시결과 평가점수가 65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기업이 이노비즈로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업은 벤처기업확인요령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보증기업"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현장평가 등) ① 제7조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받은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이 제3조에 따른 신청자격을 구비하고 평가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평가 7일 전까지 평가일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준비할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 납부할 수수료 등을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평가일은 신청기업과 평가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별표 3에 따른 기술혁신시스템 해당 업종의 평가지표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고시한 기술평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동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현장평가시 벤처기업확인요령제6조에 따른 기술성·사업성 평가(이하 "벤처기업 평가"라 한다)항목을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는 벤처기업 평가결과를 준용한다.

- 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위하여 신청기업의 업종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평가자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해당 신청기업의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직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평가단은 현장평가 장소에 신청기업 소속이 아닌 자의 출입을 제한할수 있다.
- ④ 평가기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현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절차, 세부 평가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 시할 수 있다.
- 제9조(신청취소 등) ① 신청기업이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 실시 전에 기업의 내부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현장평가를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평가기관에 이노비즈 신청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의 취소는 이노비즈넷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신청기업이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이노비즈넷에 입력한 정보 및 평가기관이 신청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수용하여 신청기업이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이노비즈넷에 입력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평가기관에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신청취소 후 재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를 삭제하거나 제출서류를 반려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선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21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8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신청기업에게 통지한 평가일 전일까지 평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통지한 평가일로부터 평가수수료 납부일까지의 기가
 - 2. 제8조제1항의 평가계획을 통지한 후 신청기업이 평가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평가기관에 요청한 경우, 통지한 평가일로부터 신청기업의 요청에 따라 연기한 날까지의 기간
- 제11조(이노비즈 선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기술 혁신시스템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이고, 기술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이노비즈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은 평가기관이 평가결과를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 ② 평가기관은 제7조제3항에 의거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기업이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로 선정된 경우 "보증결정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평가기관은 평가결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업에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기업으로부터 평가결과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 제12조(확인서 발급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이노비즈 영문확인서(이하 "영문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확인서의 발급·교부에 관한 업무는 해당 신청기업의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한다. 단, 영문확인서의 업체명, 대표자, 주소는 대문자로 명기하고, 영문 성명은 여권정보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확인서 발급지역은 기업의 본사를 기준으로 하고, 확인서 발급명의는 "중소기업청장"으로 하며, 확인서의 발급번호는 다음 각 호의 규정

- 에 따라 부여한다.
- 1. 확인서의 발급번호는 11단위(000000-00000)로 부여한다.
- 2. 앞부분 6단위 중 첫째·둘째자리는 발급년도, 셋째·넷째자리는 발급지역, 다섯째·여섯째자리는 평가지표를 의미하며 다음 각목에서 정한 표기방법 및 표기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 가. 발급년도 표기방법 : 발급년도의 마지막 2자리(예 : 2014년의 경우 "14"로 표기) 숫자로 표기
- 나. 발급지역의 표기기준 : 서울은 01, 부산·울산은 02, 대구·경북은 03, 광주·전남·제주는 04, 대전·충남·세종은 05, 경기는 06, 인천은 07, 강원은 08, 충북은 09, 전북은 10, 경남은 11로 표기
- 다. 평가지표 표기기준: 제조업은 01, 비제조업은 02, 소프트웨어업은 03, 환경업은 04, 바이오산업은 05, 건설업은 06, 전문디자인업은 07, 농업은 08로 표기
- 3. 뒷부분 5단위는 발급지역, 평가지표와 관계없이 매 연도별로 확인서를 발급한 순서에 따라 이노비즈넷을 통해 발급번호를 부여한다.
- ③ 등급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한다.
- 1.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 800점 미만인 경우 "A" 등급
- 2. 평가점수가 800점 이상 900점 미만인 경우 "AA" 등급
- 3. 평가점수가 900점 이상인 경우 "AAA" 등급
- ④ 유효기간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제13조(확인서의 재발급) ① 이노비즈로 선정된 기업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1. 상호,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 2. 확인서의 분실·훼손 등의 경우
 -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수·합병, 통합, 조직변경 등을 사유로 이노 비즈 선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 받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재발급할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확인서의 본문 아래 부분에 재발급 사유 및 재발급 일자를 명기하여야 하며,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확인서 번호의 지역코드를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선정의 승계)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노비즈 선정의 승계가 가능하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확인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 1.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2.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인 경우(단,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가 아닌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3.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제5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이노비즈인 경우
 - 4.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제5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단, 흡수통합의 경우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호 규정을 준용하여 승계 가능여부를 결정한다.)
 - 5.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 직을 변경한 경우
 - 6. 제13조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 제15조(유효기간의 연장) ①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선정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사실을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해당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단, 유효기간 만료일이전에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만료 35일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 연장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술·경영진단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평가결과를 신청일부터 21일 이내에 이노비즈넷에 등록하여야 하며,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에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현장평가시 벤처기업 평가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는 벤처기업 평가결과를 준용한다.
- ③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기업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기업으로 하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대하여 평가기관이 평가결과를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갱신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 연장기간은 확인서 발급일이기존 유효기간 범위 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익일부터 3년으로 하고, 기존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확인서를 발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 ④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유효기간 연장에 의한 확인서의 갱신발급은 최초 발급된 확인서의 번호를 그대로 부여하고, 확인서 번호의 앞쪽에 R표기를 더하여 신규지 정과 구별되게 한다.
- 제16조(사후관리)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노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기술혁신시스템 운영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 제17조(선정취소)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노비즈 선정기업이 다음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기업에 대하여 이노비즈 선정을 취소할 수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선정기업이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
 - 2.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
 - 3. 제3조에 따른 이노비즈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
 - 4. 휴폐업, 조업중단, 금융규제, 국세체납 등으로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한 경우
 - 5. 기타 제16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평가기관은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선정취소 사유를 발견할 경우 해당기업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선정기업이 선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 해당기업을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취소하였을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15일 이내에 해당기업의 확인서를 반납 받아야 하며, 해당기업이 확인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그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8조(평가수수료 등) ① 평가기관은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평가수수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기업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하되 신청기업이 부담한다.
 - 1. 제7조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의 경우에는 70만원을 평가수수료로 한다.
 - 2. 제8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의해 벤처기업 평가 결과를 준용한 경우 평가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다.
 - 3. 제15조에 따른 선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현장평가의 경우에는 40 만원을 평가수수료로 한다.
 - ② 평가수수료를 납부하고 현장평가를 진행한 경우에 신청기업은 평가수수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 ③ 관리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평가수수료 징수 및 세금 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19조(이노비즈 선정 관련정보 관리)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노비즈 확인 서 발급현황, 대표자·상호·소재지 등의 변경에 따른 확인서 재발급, 이노 비즈 선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확인서 갱신발급, 이노비즈 선정 취소 등의 경우 이노비즈넷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 제20조(이노비즈 정보관리) ①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자가진단, 현장평가, 사후관리 등의 현황을 관리기관, 평가기관 및 해당기업이 수시 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이노비즈넷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 ②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통계현황 등을 매월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세부지침의 제정)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기업 선정·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 기업청장과 협의를 거쳐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2조(이노비즈 협의회) 관리기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노비즈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신청되어 처리 중인 이노비즈 선정 및 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노비즈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4조 (재검토 기한) 중소기업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43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일 중 소 기 업 청 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제정 2014. 7.1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36호 개정 2015.12.1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65호 개정 2016. 8.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이노비즈"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말한다.
- 2. "업력"이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로부터, 법인 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일로부터 이노비즈 선정 신청일 현 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때 휴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3. "평가기관"이란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서 기술보증기금을 말한다.
- 4. "이노비즈넷"이란 이노비즈를 선정·관리하고, 이들 기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구축한 종합정보망(www.innobiz.net)을 말한다.
- 5. "자가진단"은 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이노비즈넷 에 구축된 해당 업종의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에 따라 스스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 6. "기업합병"이란 두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되면

- 서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7. "중소기업통합"이란 개인중소기업 간의 통합 또는 개인중소기업과 법인 중소기업 간의 통합방식에 의해 법인중소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8. "회사분할"이란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9.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한다.
- 10. "관리기관"이란 이노비즈 평가지표 개발, 제도개선, 이노비즈넷 관리·운영, 현장평가업무 관리 등 이노비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이노비즈 신청대상) ① 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다.
 - 1.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C")
 - 2.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F")
 - 3. 농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A01")
 - 4. 비제조업(제조업, 건설업, 농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
 - 5. 소프트웨어업
 - 6. 바이오업(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 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표」중 바이오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 7. 환경업(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련기술을 이용하여 오염 저감시설 및 기기 등을 설계, 제작, 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 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 표」중 환경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 8. 전문디자인업(한국표준산업분류-M732)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 1.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3.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 4.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제4조(업종의 구분) ① 이노비즈 신청기업의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 큰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② 업종을 전환하는 기업은 실제 영위중인 업종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환하는 업종에 종사할 종업원 수, 생산설비투자 등을 감안하여 전환하는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이노비즈 평가지표 적용 시 업종구분은 신청기업의 영위업종 및 평가신청 기술분야에 따라 제3조제1항의 업종 중 하나로 분류한다.
-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 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도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
 - 3.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 4.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 ② 흡수합병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피합병된

- 기업의 업력을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피합병된 기업과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종이 동일할 것
- 2.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의 50%이상일 것
- 3. 피합병기업의 상근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합병 후 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 ③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1.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 2.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설기업과 업종이 동일한 소멸 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 ④ 회사분할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1. 기존기업의 영업실적이 분리 확인될 것
- 2. 기존기업 또는 기존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분할 후 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 ⑤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흡수 통합의 경우에는 제2항을,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하여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1. 통합 후 법인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통합 전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하고 통합 전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을 계 속 영위(통합 전 양기업의 업종을 동시영위 포함)할 것
-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설립·존속 되는 법인의 주주일 것
- 3.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과점주주의 개인사업을 승계하는 것이 아닐 것
- ⑥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 직변경의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 법인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개인기업의 경우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제6조(이노비즈 평가기준)** ①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3의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와 평가기관이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고시한 기술평가표로 한다. 다만, 평가기관은 기술평가표를 이노비즈넷에 고시 또는 개정고시하기 전에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평가지표, 운영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4의 기술・경영진 단평가표로 한다.
- 제7조(이노비즈 신청) ① 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이 이노비즈넷의 신청절차에 따라 일반현황, 재무상태 등을 입력하고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기관이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이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절차 중 신청기업의 자가진단 실시결과 평가점수가 65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기업이 이노비즈로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업은 벤처기업확인요령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보증기업"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현장평가 등)** ① 제7조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받은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이 제3조에 따른 신청자격을 구비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평가 7일 전까지 평가일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준비할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 납부할수수료 등을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평가일은 신청기업과 평가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별표 3에 따른 기술혁신시스템 해당 업종의 평가지표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고시한 기술평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 항목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생략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는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결과를 준용한다.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동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현장평가시 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에 따른 기술성·사업성 평가(이하 "벤처기업 평가"라 한다)항목
- 2. 평가기관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파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 산출 이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한 현장평가 시「기술신용보증기금법」제28조제1항제6호의 "기술평가" 항목
- 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위하여 신청기업의 업종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평가자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자의 현장평가 수행경험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을 1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청기업의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직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평가단은 현장평가장소에 신청기업 소속이 아닌 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평가기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현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절차, 세부 평가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신청취소 등) ① 신청기업이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 실시 전에 기업의 내부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현장평가를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평가기관에 이노비즈 신청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경우 신청의 취소는 이노비즈넷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신청기업이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이노비즈넷에 입력한 정보 및 평가기관이 신청기업으로 한다.
 -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수용하여 신청기업이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이노비즈넷에 입력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평가기관에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신청취소 후 재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를 삭제하거나 제출서류를 반려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현장평가업무 처리기간) ① 평가기관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노 비즈 선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를 완료하고

- 그 결과를 이노비즈넷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리기간은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21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8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신청기업에게 통지한 평가일 전일까지 수수 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통지한 평가일로부터 수수료 납부일까지의 기간
- 2. 제8조제1항의 평가계획을 통지한 후 신청기업이 평가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평가기관에 요청한 경우, 통지한 평가일로부터 신청기업의 요청에 따라 연기한 날까지의 기간
- 제11조(이노비즈 선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기술 혁신시스템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이고, 기술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이노비즈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은 평가기관이 평가결과를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 ② 평가기관은 제7조제3항에 의거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기업이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로 선정된 경우 "보증결정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평가기관은 평가결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업에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기업으로부터 평가결과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 제12조(확인서 발급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이노비즈 영문확인서(이하 "영문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확인서의 발급·교부에 관한 업무는 해당 신청기업의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한다. 단, 영문확인서의 업체명, 대표자, 주소는 대문자로명기하고, 영문 성명은 여권정보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확인서 발급지역은 기업의 본사를 기준으로 하고, 확인서 발급명의는 "중소기업청장"으로 하며, 확인서의 발급번호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다.
 - 1. 확인서의 발급번호는 11단위(000000-00000)로 부여한다.

- 2. 앞부분 6단위 중 첫째·둘째자리는 발급년도, 셋째·넷째자리는 발급지역, 다섯째·여섯째자리는 평가지표를 의미하며 다음 각목에서 정한 표기방법 및 표기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 가. 발급년도 표기방법: 발급년도의 마지막 2자리(예: 2014년의 경우 "14"로 표기) 숫자로 표기
 - 나. 발급지역의 표기기준: 서울은 01, 부산은 02, 대구·경북은 03, 광주·전남·제주는 04, 대전·충남·세종은 05, 경기는 06, 인천은 07, 강원은 08, 충북은 09, 전북은 10, 경남은 11, 울산은 12로 표기
 - 다. 평가지표 표기기준: 제조업은 01, 비제조업은 02, 소프트웨어업은 03, 환경업은 04, 바이오산업은 05, 건설업은 06, 전문디자인업은 07, 농업은 08로 표기
- 3. 뒷부분 5단위는 발급지역, 평가지표와 관계없이 매 연도별로 확인서를 발급한 순서에 따라 이노비즈넷을 통해 발급번호를 부여한다.
- ③ 등급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한다.
- 1.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 800점 미만인 경우 "A" 등급
- 2. 평가점수가 800점 이상 900점 미만인 경우 "AA" 등급
- 3. 평가점수가 900점 이상인 경우 "AAA" 등급
- ④ 유효기간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제13조(확인서의 재발급) ① 이노비즈로 선정된 기업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1. 상호,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 2. 확인서의 분실 · 훼손 등의 경우
 -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수·합병, 통합, 조직변경 등을 사유로 이노비 즈 선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 받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재발급할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확인서의 본문 아래 부분에 재발급 사유 및 재발급 일자를 명기하여야 하며, 소재

- 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확인서 번호의 지역코드를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선정의 승계)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노비즈 선정의 승계가 가능하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확인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 1.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2.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인 경우(단,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가 아닌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3.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제5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이 노비즈인 경우
 - 4.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제5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단, 흡수통합의 경우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호 규정을 준용하여 승계 가능여부를 결정한다.)
 - 5.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을 변경한 경우
 - 6. 제13조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의한 가업 상속공제를 받은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 제15조(유효기간의 연장) ①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선정 유효기간의 만료 가 도래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사실을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후 30일 이내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단,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만료 35일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 연장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

- 여 별표 4의 기술·경영진단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평가결과를 신청일부터 21일 이내에 이노비즈넷에 등록하여야 하며, 제 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 항목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생략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는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결과를 준용한다.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동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현장평가시 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에 따른 기술성・사업성 평가 (이하 "벤처기업 평가"라 한다)항목
- 2. 평가기관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파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 산출 이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한 현장평가 시「기술신용보증기금법」제28조제1항제6호의 "기술평가" 항목
- ③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기업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기업으로 하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대하여 평가기관이 평가결과를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갱신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 연장기간은 확인서 발급일이기존 유효기간 범위 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3년으로 하고, 기존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확인서를 발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 ④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유효기간 연장에 의한 확인서의 갱신발급은 최초 발급된 확인서의 번호를 그대로 부여하고, 확인서 번호의 앞쪽에 R표기를 더하여 신규지 정과 구별되게 한다.
- **제16조(사후관리)**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노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기술혁신시스템 운영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 제17조(선정취소)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노비즈 선정기업이 다음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기업에 대하여 이노비즈 선정을 취소할 수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선정기업이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

- 2.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
- 3. 제3조에 따른 이노비즈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
- 4. 휴·페업, 조업중단, 금융규제, 국세체납 등으로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 한 경우
- 5. 기타 제16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평가기관은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선정취소 사유를 발견할 경우 해당기업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선정기업이 선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 해당기업을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취소하였을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15일 이내에 해당기업의 확인서를 반납 받아야 하며, 해당기업이 확인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그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수수료 등) ① 신청기업은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 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하되 신청기업이 부담한다.
 - 1. 제7조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의 경우에는 70만원을 수수료로 한다.
 - 2. 제8조제2항1호 또는 제15조제2항1호에 의해 평가 결과를 준용한 경우수료를 차감할 수 있다.
 - 3. 제15조에 따른 선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현장평가의 경우에는 40만원을 수수료로 한다.
 - ② 수수료를 납부하고 현장평가를 진행한 경우에 신청기업은 수수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의 경우 수수료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관리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수료 징수 및 세금계산 서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9조(이노비즈 선정 관련정보 관리)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노비즈 확인서 발급현황, 대표자·상호·소재지 등의 변경에 따른 확인서 재발급, 이노비즈 선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확인서 갱신발급, 이노비즈 선정 취소 등의 경우 이노비즈넷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 제20조(이노비즈 정보관리) ①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자가진단, 현장평가, 사후관리 등의 현황을 관리기관, 평가기관 및 해당기업이 수시 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이노비즈넷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 ②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통계현황 등을 매월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세부지침의 제정)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기업 선정·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 업청장과 협의를 거쳐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22조(이노비즈 협의회) 관리기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노비즈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신청되어 처리 중인 이노비즈 선정 및 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노비즈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4조 (재검토 기한) 중소기업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시행 2017. 8. 29.]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5호, 2017. 8. 29.,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기술정책과), 044-204-774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 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이노비즈"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말한다.
- 2. "업력"이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로부터, 법인 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일로부터 이노비즈 선정 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때 휴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3. "평가기관"이란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서 기술보증기금을 말한다.
- 4. "이노비즈넷"이란 이노비즈를 선정·관리하고, 이들 기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구축한 종합정보망(www.innobiz.net)을 말한다.
- 5. "자가진단"은 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이노비즈넷에 구축된 해당 업종의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에 따라 스스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 6. "기업합병"이란 두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되면 서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7. "중소기업통합"이란 개인중소기업 간의 통합 또는 개인중소기업과 법인 중소기업 간의 통합방식에 의해 법인중소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8. "회사분할"이란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9.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한다.
- 10. "관리기관"이란 이노비즈 평가지표 개발, 제도개선, 이노비즈넷 관리·운

- 영, 현장평가업무 관리 등 이노비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하 " 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이노비즈 신청대상) ① 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다.
 - 1.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C")
 - 2.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F")
 - 3. 농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A01")
 - 4. 비제조업(제조업, 건설업, 농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
 - 5. 소프트웨어업
 - 6. 바이오업(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 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표」중 바이오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 7. 환경업(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련기술을 이용하여 오염 저감시설 및 기기 등을 설계, 제작, 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 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 표」중 환경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 8. 전문디자인업(한국표준산업분류-M732)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 1.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3.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 4.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제4조(업종의 구분) ① 이노비즈 신청기업의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에 의하되,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 큰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② 업종을 전환하는 기업은 실제 영위중인 업종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환하는 업종에 종사할 종업원 수, 생산설비투자 등을 감안하여전환하는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이노비즈 평가지표 적용 시 업종구분은 신청기업의 영위업종 및 평가신청 기술분야에 따라 제3조제1항의 업종 중 하나로 분류한다.
-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도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
 - 3.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4.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 ② 흡수합병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피합병된 기업의 업력을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피합병된 기업과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종이 동일할 것
 - 2.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의 50%이상일 것
 - 3. 피합병기업의 상근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합병 후 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 ③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1.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 2.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설기업과 업종이 동일한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 ④ 회사분할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1. 기존기업의 영업실적이 분리 확인될 것
- 2. 기존기업 또는 기존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분할 후 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 ⑤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흡수통합의 경우에는 제2항을,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하여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1. 통합 후 법인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통합 전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하고 통합 전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통합 전 양기업의 업종을 동시영위 포함)할 것
-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설립·존속되는 법인의 주주일 것
- 3.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과점주주의 개인사업을 승계하는 것이 아닐 것
- ⑥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 변경의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 법인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개인기업의 경우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제6조(이노비즈 평가기준) ①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3의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와 평가기관이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고시한 기술평가표로 한다. 다만, 평가기관은 기술평가표를 이노비즈넷에 고시 또는 개정고시하기 전에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평가지표, 운영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4의 기술·경영진단평 가표로 한다.
- 제7조(이노비즈 신청) ① 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 이라 한다)이 이노비즈넷의 신청절차에 따라 일반현황, 재무상태 등을 입력하고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기관이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이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절차 중 신청기업의 자가진단 실시결과 평가점수가 650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기업이 이노비즈로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업은 벤처기업확인요령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보증기업"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현장평가 등) ① 제7조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받은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이 제3조에 따른 신청자격을 구비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평가 7일 전까지 평가일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준비할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 납부할 수수료 등을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평가일은 신청기업과 평가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별표 3에 따른 기술혁신시스템 해당 업종의 평가지표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고시한 기술평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 항목 일부를 생략할 수있으며, 생략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는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결과를 준용한다.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동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현장평가시 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에 따른 기술성·사업성 평가(이하 "벤처기업 평가"라 한다)항목
 - 2. 평가기관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파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 산출 이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한 현장평가 시「기술신용보증기금법」제28조제1항제6호의 "기술평가" 항목
 - 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위하여 신청기업의 업종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평가자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자의 현장평가 수행경험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을 1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청기업의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직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평가단은 현장평가 장소에 신청기업 소속이 아닌 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평가기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현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절차, 세부 평가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수 있다.
- 제9조(신청취소 등) ① 신청기업이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 실시 전에 기업의 내부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현장평가를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평가 기관에 이노비즈 신청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의 취소는 이노비즈넷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신청기업이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이노비즈넷에 입력한 정보 및 평가기관이 신청기업으로부터 제출받 은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수용하여 신청기업이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이노비즈넷에 입력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평가기관에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신청취소 후 재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를 삭제하거나 제출서류를 반려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현장평가업무 처리기간) ① 평가기관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 를 이노비즈넷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리기간은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21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8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신청기업에게 통지한 평가일 전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통지한 평가일로부터 수수료 납부일까지의 기간
 - 2. 제8조제1항의 평가계획을 통지한 후 신청기업이 평가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평가기관에 요청한 경우, 통지한 평가일로부터 신청기업의 요청에 따라 연기한 날까지의 기간
- 제11조(이노비즈 선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이고, 기술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이노비즈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은 평가기관이 평가결과를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 ② 평가기관은 제7조제3항에 의거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기업이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로 선정된 경우 "보증결정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평가기관은 평가결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업에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기업으로부터 평가결과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 제12조(확인서 발급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이노비즈 영문확인서(이하 "영문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확인서의 발급·교부에 관한 업무는 해당 신청기업의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수행한다. 단, 영문확인서의 업체명, 대표자, 주소는 대문자로 명기하고, 영문 성명은 여권정보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확인서 발급지역은 기업의 본사를 기준으로 하고, 확인서 발급명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확인서의 발급번호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다.
 - 1. 확인서의 발급번호는 11단위(000000-00000)로 부여한다.
 - 2. 앞부분 6단위 중 첫째·둘째자리는 발급년도, 셋째·넷째자리는 발급지역, 다섯째·여섯째자리는 평가지표를 의미하며 다음 각목에서 정한 표기방법 및 표기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 가. 발급년도 표기방법 : 발급년도의 마지막 2자리(예 : 2014년의 경우 "14"로 표기) 숫자로 표기
 - 나. 발급지역의 표기기준 : 서울은 01, 부산은 02, 대구·경북은 03, 광주·전남·제주는 04, 대전·충남·세종은 05, 경기는 06, 인천은 07, 강원은 08, 충북은 09, 전북은 10, 경남은 11, 울산은 12로 표기
 - 다. 평가지표 표기기준 : 제조업은 01, 비제조업은 02, 소프트웨어업은 03, 환경업은 04, 바이오산업은 05, 건설업은 06, 전문디자인업은 07, 농업은 08로 표기
 - 3. 뒷부분 5단위는 발급지역, 평가지표와 관계없이 매 연도별로 확인서를 발급한 순서에 따라 이노비즈넷을 통해 발급번호를 부여한다.
 - ③ 등급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한다.
 - 1.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 800점 미만인 경우 "A" 등급

- 2. 평가점수가 800점 이상 900점 미만인 경우 "AA" 등급
- 3. 평가젂수가 900젂 이상인 경우 "AAA" 등급
- ④ 유효기간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제13조(확인서의 재발급) ① 이노비즈로 선정된 기업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1. 상호,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 2. 확인서의 분실·훼손 등의 경우
 -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수·합병, 통합, 조직변경 등을 사유로 이노비즈 선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 받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재발급할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확인서의 본문 아래 부분에 재발급 사유 및 재발급 일자를 명기하여야 하며,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확인서 번호의 지역코드를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선정의 승계)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노비즈 선정의 승계가 가능하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확인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 1.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2.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인 경우(단,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가 아닌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3.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제5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이 노비즈인 경우
 - 4.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제5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단, 흡수통합의 경우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호 규정을 준용하여 승계 가능여부를 결정한다.)

- 5.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을 변경한 경우
- 6. 제13조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의한 가업 상속공제를 받은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 제15조(유효기간의 연장) ①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선정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사실을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해당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단,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만료 35일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 연장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술·경영진단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평가결과를 신청일부터 21일 이내에 이노비즈넷에 등록하여야 하며, 제10조 제2항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 항목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생략된 항목에 대한평가결과는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결과를 준용한다.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동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현장평가시 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에 따른 기술성·사업성 평가(이하 "벤처기업 평가"라 한다)항목
 - 2. 평가기관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파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 산출 이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한 현장평가 시「기술신용보증기금법」제28조제1항제6호의 "기술평가" 항목
 - ③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기업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기업으로 하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대하여 평가기관이 평가결과를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갱신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 연장기간은 확인서 발급일이 기존 유효기간 범위 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3년으로 하고, 기존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확인서를 발급하는 기업에 대해

서는 확인서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 ④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유효기간 연장에 의한 확인서의 갱신발급은 최초 발급된 확인서의 번호를 그대로 부여하고, 확인서 번호의 앞쪽에 R표기를 더하여 신규지정과 구별되게 한다.
- 제16조(사후관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노비 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기술혁신시스템 운영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 제17조(선정취소)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노비즈 선정기업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기업에 대하여 이노비즈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선정기업이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
 - 2.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
 - 3. 제3조에 따른 이노비즈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
 - 4. 휴·폐업, 조업중단, 금융규제, 국세체납 등으로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한 경우
 - 5. 기타 제16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평가기관은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선정취소 사유를 발견할 경우 해당기업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선정기업이 선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 해당기업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취소하였을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15일 이내에 해당기업의 확인서를 반납 받아야 하며, 해당기업이 확인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그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수수료 등) ① 신청기업은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 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하되 신청기업이 부담한다.
 - 1. 제7조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의 경우에는 70만원을 수 수료로 한다.
 - 2. 제8조제2항1호 또는 제15조제2항1호에 의해 평가 결과를 준용한 경우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다.
 - 3. 제15조에 따른 선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현장평가의 경우에는 40만원을 수수료로 한다.
 - ② 수수료를 납부하고 현장평가를 진행한 경우에 신청기업은 수수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의 경우 수수료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관리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수료 징수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9조(이노비즈 선정 관련정보 관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노비즈 확인서 발급현황, 대표자·상호·소재지 등의 변경에 따른 확인서 재발급, 이노비즈 선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확인서 갱신발급, 이노비즈 선정 취소 등의 경우 이노비즈넷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 제20조(이노비즈 정보관리) ①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자가진단, 현장평가, 사후관리 등의 현황을 관리기관, 평가기관 및 해당기업이 수시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이노비즈넷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 ②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통계현황 등을 매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세부지침의 제정)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기업 선정·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벤처 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22조(이노비즈 협의회) 관리기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노비즈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2016-43호, 2016. 8. 1.>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신청되어 처리 중인 이노비즈 선정 및 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노비즈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 제4조 (재검토 기한) 중소기업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04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정 2014. 07. 1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36호 개정 2017. 08. 29.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05호 개정 2018. 01. 09.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0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이노비즈"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말한다.
- 2. "업력"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속 유지된 기간으로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일로부터 이노비즈 선정 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때 휴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3. "평가기관"이란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기술보증기금을 말한다.
- 4. "이노비즈넷"이란 이노비즈를 선정·관리하고, 이들 기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구축한 종합정보망(www.innobiz.net)을 말한다.
- 5. "자가진단"은 이노비즈로 선정 받고자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이노비즈넷에 구축된 해당 업종의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에 따라 스스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 6. "기업합병"이란 두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되면서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게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
- 7. "중소기업통합"이란 개인중소기업 간의 통합 또는 개인중소기업과 법인 중소기업 간의 통합방식에 의해 법인중소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8. "회사분할"이란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9.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한다.
- 10. "관리기관"이란 이노비즈 평가지표 개발, 제도개선, 이노비즈넷 관리· 운영, 현장평가업무 관리 등 이노비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이하'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이노비즈 신청대상) ① 이노비즈로 선정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다.
 - 1.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 2.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F')
 - 3. 농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A01')
 - 4. 비제조업(제조업, 건설업, 농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
 - 5. 소프트웨어업

업 종	산업분류코드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1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2
기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1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J62010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J62021

- 6. 바이오업(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 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표」중 바이오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 7. 환경업(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련기술을 이용하여 오염 저감시설 및 기기 등을 설계, 제작, 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 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표」중 환경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 8. 전문디자인업(한국표준산업분류-M732)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 1.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 3. 신용도판단정보, 5. 공공정보의 1) 체납 정보 등"에 등록 중인 기업(제3호의 단서 조항 적용)
-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3.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 4.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제4조(업종의 구분) ① 이노비즈 신청기업의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 큰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② 업종을 전환하는 기업은 실제 영위중인 업종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환하는 업종에 종사할 종업원 수, 생산설비투자 등을 감안하여 전환하는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이노비즈 평가지표 적용 시 업종구분은 신청기업의 영위업종 및 평가신청 기술분야에 따라 제3조제1항의 업종 중 하나로 분류한다.
-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도 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
 - 3.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 4.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 ② 흡수합병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피합병된 기업의

업력을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피합병된 기업과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종이 동일할 것
- 2.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의 50%이상일 것
- 3. 피합병기업의 상근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합병 후 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 ③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1.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 2.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설기업과 업종이 동일한 소멸 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 ④ 회사분할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1. 분할 이후 해당기업의 매출실적이 확인될 것
 - 2. 기존기업 또는 기존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분할 후 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 ⑤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흡수통합의 경우에는 제2항을,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하여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1. 통합 후 법인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통합 전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하고 통합 전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통합 전 양기업의 업종을 동시영위 포함)할 것
-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설립·존속되는 법인의 주주일 것
- 3.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과점주주의 개인사업을 승계하는 것이 아닐 것
- ⑥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 법인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개인기업의 경우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제6조(이노비즈 평가기준)** ①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3의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와 평가기관이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고시한 기술

평가표로 한다. 다만, 평가기관은 기술평가표를 이노비즈넷에 고시 또는 개정 고시하기 전에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평가지표, 운영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4의 기술·경영진단평가표로 한다.
- 제7조(이노비즈 신청) ① 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 이라 한다)이 이노비즈넷의 신청절차에 따라 일반현황, 재무상태 등을 입력하고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기관이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이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절차 중 신청기업의 자가진단 실시결과 평가점수가 65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기업이 이노비즈로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업은 벤처기업확인요령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보증기업"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현장평가 등)** ① 제7조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받은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이 제3조에 따른 신청자격을 구비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평가 7일 전까지 평가일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준비할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 납부할 수수료 등을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평가일은 신청기업과 평가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별표 3에 따른 기술혁신시스템 해당 업종의 평가지표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고시한 기술평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 항목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생략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는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결과를 준용한다.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동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현장평가시 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에 따른 기술성·사업성 평가(이하 "벤처기업 평가"라 한다)항목
 - 2. 평가기관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파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 산출 이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한 현장평가 시「기술신용보증기금법」제28조제1항제6호의

"기술평가" 항목

- 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위하여 신청기업의 업종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평가자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자의 현장평가 수행경험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을 1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청기업의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 벤처기업청 직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평가단은 현장평가 장소에 신청기업소속이 아닌 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평가기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현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 절차, 세부 평가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신청취소 등) ① 신청기업이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 실시 전에 기업의 내부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현장평가를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평가 기관에 이노비즈 신청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의취소는 이노비즈넷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신청기업이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이노비즈넷에 입력한 정보 및 평가기관이 신청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모든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수용하여 신청 기업이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이노비즈넷에 입력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평가기관에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신청취소 후 재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를 삭제하거나 제출서류를 반려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현장평가업무 처리기간) ① 평가기관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노비즈넷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리기간은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21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8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신청기업에게 통지한 평가일 전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통지한 평가일로부터 수수료 납부일까지의 기간
 - 2. 제8조제1항의 평가계획을 통지한 후 신청기업이 평가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평가기관에 요청한 경우, 통지한 평가일로부터 신청기업의 요청에 따라 연기한 날까지의 기간

- 제11조(이노비즈 선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이고, 기술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이노비즈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은 평가기관이 평가결과를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 ② 평가기관은 제7조제3항에 의거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기업이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로 선정된 경우 "보증결정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평가기관은 평가결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업에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기업으로 부터 평가결과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 제12조(확인서 발급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이하 "확인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이노비즈 영문확인서(이하 "영문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확인서의 발급·교부에 관한 업무는 해당 신청기업의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수행한다. 단, 영문확인서의 업체명, 대표자, 주소는 대문자로 명기하고, 영문 성명은 여권정보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확인서 발급지역은 기업의 본사를 기준으로 하고, 확인서 발급명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확인서의 발급번호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다.
 - 1. 확인서의 발급번호는 11단위(000000-00000)로 부여한다.
 - 2. 앞부분 6단위 중 첫째·둘째자리는 발급년도, 셋째·넷째자리는 발급지역, 다섯째·여섯째자리는 평가지표를 의미하며 다음 각목에서 정한 표기방법 및 표기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 가. 발급년도 표기방법 : 발급년도의 마지막 2자리(예 : 2014년의 경우 "14"로 표기) 숫자로 표기
 - 나. 발급지역의 표기기준 : 서울은 01, 부산은 02, 대구·경북은 03, 광주·전남·제주는 04, 대전·충남·세종은 05, 경기는 06, 인천은 07, 강원은 08, 충북은 09, 전북은 10, 경남은 11, 울산은 12로 표기
 - 다. 평가지표 표기기준 : 제조업은 01, 비제조업은 02, 소프트웨어업은 03, 환경업은 04, 바이오산업은 05, 건설업은 06, 전문디자인업은 07, 농업은 08로 표기
 - 3. 뒷부분 5단위는 발급지역, 평가지표와 관계없이 매 연도별로 확인서를 발급한 순서에 따라 이노비즈넷을 통해 발급번호를 부여한다.

- ③ 등급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한다.
- 1.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 800점 미만인 경우 "A" 등급
- 2. 평가점수가 800점 이상 900점 미만인 경우 "AA" 등급
- 3. 평가점수가 900점 이상인 경우 "AAA" 등급
- ④ 유효기간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제13조(확인서의 재발급) ① 이노비즈로 선정된 기업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 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1. 상호,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 2. 확인서의 분실·훼손 등의 경우
 -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수·합병, 통합, 조직변경 등을 사유로 이노비즈 선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 받은 지방중소 벤처기업청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재발급할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확인서의 본문 아래 부분에 재발급 사유 및 재발급 일자를 명기하여야 하며,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확인서 번호의 지역코드를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선정의 승계)**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한 기업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노비즈 선정의 승계가 가능하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확인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 1.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2.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인 경우(단,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가 아닌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3.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제5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이노비즈인 경우
 - 4.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제5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단, 흡수통합의 경우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호 규정을 준용하여 승계 가능여부를 결정한다.)

- 5. 「상법」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을 변경한 경우
- 6. 제13조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의한 가업 상속공제를 받은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 제15조(유효기간의 연장) ①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선정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사실을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해당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단,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만료 35일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 연장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술·경영진단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평가결과를 신청일부터 21일 이내에 이노비즈넷에 등록하여야 하며,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 항목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생략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는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결과를 준용한다.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동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현장평가시 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에 따른 기술성·사업성 평가 (이하 "벤처기업 평가"라 한다)항목
 - 2. 평가기관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파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 산출 이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한 현장평가 시「기술신용보증기금법」제28조제1항제6호의 "기술평가" 항목
 - ③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기업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기업으로 하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대하여 평가기관이 평가결과를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갱신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 연장기간은 확인서 발급일이 기존 유효기간 범위 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3년으로 하고, 기존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확인서를 발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 ④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유효기간 연장에 의한 확인서의 갱신발급은 최초 발급된 확인서의 번호를 그대로 부여하고, 확인서 번호의 앞쪽에 R표기를 더하여 신규지정과 구별되게 한다.
- **제16조(사후관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노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기술혁신시스템 운영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 제17조(선정취소)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노비즈 선정기업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기업에 대하여 이노비즈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선정기업이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
 - 2.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
 - 3. 제3조에 따른 이노비즈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
 - 4. 휴·폐업, 조업중단, 금융규제, 국세체납 등으로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한 경우
 - 5. 기타 제16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평가기관은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선정취소 사유를 발견할 경우 해당기업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선정기업이 선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 해당기업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취소하였을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15일 이내에 해당기업의 확인서를 반납 받아야 하며, 해당기업이 확인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그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수수료 등) ① 신청기업은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 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하되 신청기업이 부담한다.
 - 1. 제7조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의 경우에는 70만원을 수수료로 한다.
 - 2. 제8조제2항1호 또는 제15조제2항1호에 의해 평가 결과를 준용한 경우수료를 차감할 수 있다.
 - 3. 제15조에 따른 선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현장평가의 경우에는 40만원을 수수료로 한다.

- ② 수수료를 납부하고 현장평가를 진행한 경우에 신청기업은 수수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의 경우 수수료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관리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수료 징수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9조(이노비즈 선정 관련정보 관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노비즈 확인서 발급현황, 대표자·상호·소재지 등의 변경에 따른 확인서 재발급, 이노비즈 선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확인서 갱신발급, 이노비즈 선정 취소 등의 경우 이노비즈넷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 제20조(이노비즈 정보관리) ①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자가진단, 현장평가, 사후관리 등의 현황을 관리기관, 평가기관 및 해당기업이 수시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이노비즈넷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 ②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통계현황 등을 매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세부지침의 제정)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기업 선정·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벤처 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22조(이노비즈 협의회)** 관리기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노비즈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2018-4호, 2018.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신청되어 처리 중인 이노비즈 선정 및 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노비즈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 제4조 (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시행 2021. 3. 5.]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16호, 2021. 3. 5.,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기술정책과), 044-204-774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 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이노비즈"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말한다.
- 2. "업력"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속 유지된 기간으로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일로부터 이노비즈 선정 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때 휴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3. "평가기관"이란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서 기술보증기금을 말한다.
- 4. "이노비즈넷"이란 이노비즈를 선정·관리하고, 이들 기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구축한 종합정보망(www.innobiz.net)을 말한다.
- 5. "자가진단"은 이노비즈로 선정 받고자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이노비즈넷에 구축된 해당 업종의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에 따라 스스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 6. "기업합병"이란 두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되면 서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7. "중소기업통합"이란 개인중소기업 간의 통합 또는 개인중소기업과 법인 중소기업 간의 통합방식에 의해 법인중소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8. "회사분할"이란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9.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

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한다.

- 10. "관리기관"이란 이노비즈 평가지표 개발, 제도개선, 이노비즈넷 관리· 운영, 현장평가업무 관리 등 이노비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이노비즈 신청대상) ① 이노비즈로 선정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다.
 - 1.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 2.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F')
 - 3. 농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A01')
 - 4. 비제조업(제조업, 건설업, 농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
 - 5. 소프트웨어업

업 종	산업분류코드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1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2
기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1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J62010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J62021

- 6. 바이오업(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 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표」중 바이오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 7. 환경업(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련기술을 이용하여 오염 저감시설 및 기기 등을 설계, 제작, 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 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

- 표, 중 환경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 8. 전문디자인업(한국표준산업분류-M732)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 1.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 3. 신용도판단정보, 5. 공공정보의 1) 체납정 보 등"에 등록 중인 기업(제3호의 단서 조항 적용)
-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3.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 4.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제4조(업종의 구분) ① 이노비즈 신청기업의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 큰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② 업종을 전환하는 기업은 실제 영위중인 업종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환하는 업종에 종사할 종업원 수, 생산설비투자 등을 고려하여전환하는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개정 2021. 3. 5.>
 - ③ 이노비즈 평가지표 적용 시 업종구분은 신청기업의 영위업종 및 평가신청 기술분야에 따라 제3조제1항의 업종 중 하나로 분류한다.
-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도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

- 3.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 4.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 ② 흡수합병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피합병된 기업의 업력을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피합병된 기업과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종이 동일할 것
- 2.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의 50%이상일 것
- 3. 피합병기업의 상근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합병 후 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 ③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1.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 2.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설기업과 업종이 동일한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 ④ 회사분할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1. 분할 이후 해당기업의 매출실적이 확인될 것
- 2. 기존기업 또는 기존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분할 후 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 ⑤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흡수통합의 경우에는 제2항을,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하여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1. 통합 후 법인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통합 전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하고 통합 전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통합 전 양기업의 업종을 동시영위 포함)할 것
-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설립·존속 되는 법인의 주주일 것
- 3.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과점주주의 개인사업을 승계하는 것이 아닐 것
- ⑥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

변경의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 법인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개인기업의 경우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제6조(이노비즈 평가기준)** ①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3의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와 평가기관이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고시한 기술평가표로 한다. 다만, 평가기관은 기술평가표를 이노비즈넷에 고시 또는 개정고시하기 전에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평가지표, 운영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4의 기술・경영진단평가표로 한다.
- 제7조(이노비즈 신청) ① 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 이라 한다)이 이노비즈넷의 신청절차에 따라 일반현황, 재무상태 등을 입력하고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기관이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이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절차 중 신청기업의 자가진단 실시결과 평가점수가 650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기업이 이노비즈로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업은 벤처기업확인요령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보증기업"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현장평가 등)** ① 제7조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받은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이 제3조에 따른 신청자격을 구비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평가 7일 전까지 평가일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준비할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 납부할 수수료 등을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평가일은 신청기업과 평가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별표 3에 따른 기술혁신시스템 해당 업종의 평가지표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고시한 기술평가표에 따라 실 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 항목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생략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는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결과를 준용

하다.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동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현장평가시 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에 따른 기술성·사업성 평가(이하 "벤처기업 평가"라 한다)항목
- 2. 평가기관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파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 산출 이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한 현장평가 시「기술신용보증기금법」제28조제1항제6호의 "기술평가" 항목
- 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위하여 신청기업의 업종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평가자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자의 현장평가 수행경험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을 1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청기업의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직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평가단은 현장평가 장소에 신청기업 소속이 아닌 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평가기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현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절차, 세부 평가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수 있다.
- 제9조(신청취소 등) ① 신청기업이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 실시 전에 기업의 내부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현장평가를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평가 기관에 이노비즈 신청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의 취소는 이노비즈넷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신청기업이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이노비즈넷에 입력한 정보 및 평가기관이 신청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수용하여 신청기업이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이노비즈넷에 입력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평가기관에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신청취소 후 재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를 삭제하거나 제출서류를 반려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현장평가업무 처리기간) ① 평가기관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노비즈넷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리기간은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21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8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신청기업에게 통지한 평가일 전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통지한 평가일로부터 수수료 납부일까지의 기가
- 2. 제8조제1항의 평가계획을 통지한 후 신청기업이 평가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평가기관에 요청한 경우, 통지한 평가일로부터 신청기업의 요청에 따라 연기한 날까지의 기간
- 제11조(이노비즈 선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이고, 기술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이노비즈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은 평가기관이 평가결과를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 ② 평가기관은 제7조제3항에 의거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기업이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로 선정된 경우 "보증결정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평가기관은 평가결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업에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기업으로부터 평가결과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 제12조(확인서 발급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이노비즈 영문확인서(이하 "영문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확인서의 발급·교부에 관한 업무는 해당 신청기업의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수행한다. 단, 영문확인서의 업체명, 대표자, 주소는 대문자로 명확하게 적고, 영문 성명은 여권정보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5.>
 - ② 확인서 발급지역은 기업의 본사를 기준으로 하고, 확인서 발급명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확인서의 발급번호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다.

- 1. 확인서의 발급번호는 11단위(000000-00000)로 부여한다.
- 2. 앞부분 6단위 중 첫째·둘째자리는 발급년도, 셋째·넷째자리는 발급지역, 다섯째·여섯째자리는 평가지표를 의미하며 다음 각목에서 정한 표기방법 및 표기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 가. 발급년도 표기방법 : 발급년도의 마지막 2자리(예 : 2014년의 경우 "14"로 표기) 숫자로 표기
 - 나. 발급지역의 표기기준 : 서울은 01, 부산은 02, 대구·경북은 03, 광주·전남·제주는 04, 대전·충남·세종은 05, 경기는 06, 인천은 07, 강원은 08, 충북은 09, 전북은 10, 경남은 11, 울산은 12로 표기
 - 다. 평가지표 표기기준 : 제조업은 01, 비제조업은 02, 소프트웨어업은 03, 환경업은 04, 바이오산업은 05, 건설업은 06, 전문디자인업은 07, 농업은 08로 표기
- 3. 뒷부분 5단위는 발급지역, 평가지표와 관계없이 매 연도별로 확인서를 발급한 순서에 따라 이노비즈넷을 통해 발급번호를 부여한다.
- ③ 등급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한다.
- 1.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 800점 미만인 경우 "A" 등급
- 2. 평가점수가 800점 이상 900점 미만인 경우 "AA" 등급
- 3. 평가점수가 900점 이상인 경우 "AAA" 등급
- ④ 유효기간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제13조(확인서의 재발급) ① 이노비즈로 선정된 기업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1. 상호,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 2. 확인서의 분실ㆍ훼손 등의 경우
 -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수·합병, 통합, 조직변경 등을 사유로 이노비 즈 선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 받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재발급할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확인서의 본문 아래 부분에 재발급 사유 및 재발급 일자를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확인서 번호의 지역코드를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5.>
- ④ 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선정의 승계)**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노비즈 선정의 승계가 가능하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확인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 1.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2.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인 경우(단,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가 아닌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3.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제5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이 노비즈인 경우
 - 4.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제5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단, 흡수통합의 경우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호 규정을 준용하여 승계 가능여부를 결정한다.)
 - 5.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 직을 변경한 경우
 - 6. 제13조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의한 가업 상속공제를 받은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 제15조(유효기간의 연장) ①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선정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사실을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해당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단,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만료 35일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 연장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술·경영진단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평가결 과를 신청일부터 21일 이내에 이노비즈넷에 등록하여야 하며,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 항목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생략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는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결과를 준용한다.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동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현장평가시 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에 따른 기술성·사업성 평가(이하 "벤처기업 평가"라 한다)항목
- 2. 평가기관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파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 산출 이후 1년이 지 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한 현장평가 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제1 항제6호의 "기술평가" 항목
- ③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기업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기업으로 하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대하여 평가기관이 평가결과를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갱신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 연장기간은 확인서 발급일이 기존 유효기간 범위 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3년으로 하고, 기존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확인서를 발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 ④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유효기간 연장에 의한 확인서의 갱신발급은 최초 발급된 확인서의 번호를 그대로 부여하고, 확인서 번호의 앞쪽에 R표기를 더하여 신규지정과 구별되게 한다.
- **제17조(선정취소)**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노비즈 선정기업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기업에 대하여 이노비즈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선정기업이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
 - 2.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
 - 3. 제3조에 따른 이노비즈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

- 4. 휴·폐업, 조업중단, 금융규제, 국세체납 등으로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한 경우
- 5. 기타 제16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평가기관은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선정취소 사유를 발견할경우 해당기업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선정기업이 선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 해당기업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취소하였을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15일 이내에 해당기업의 확인서를 반납 받아야 하며, 해당기업이 확인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그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수수료 등)** ① 신청기업은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 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하되 신청기업이 부담한다.
 - 1. 제7조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의 경우에는 70만원을 수 수료로 한다.
 - 2. 제8조제2항1호 또는 제15조제2항1호에 의해 평가 결과를 준용한 경우수료를 차감할 수 있다.
 - 3. 제15조에 따른 선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현장평가의 경우에는 40만원을 수수료로 한다.
 - ② 수수료를 납부하고 현장평가를 진행한 경우에 신청기업은 수수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의 경우 수수료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관리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수료 징수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9조(이노비즈 선정 관련정보 관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노비즈 확인서 발급현황, 대표자·상호·소재지 등의 변경에 따른 확인서 재발급, 이노비즈 선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확인서 갱신발급, 이노비즈 선정 취소등의 경우 이노비즈넷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 **제20조(이노비즈 정보관리)** ①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자가진단, 현장평가, 사후관리 등의 현황을 관리기관, 평가기관 및 해당기업이 수시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이노비즈넷을 운영 ·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통계현황 등을 매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21조(세부지침의 제정)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기업 선정·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벤처 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22조(이노비즈 협의회) 관리기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노비즈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2021-16호, 2021. 3. 5.>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22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정 2014. 07. 1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36호 개정 2018. 01. 09.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04호 개정 2022. 04. 01.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2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이노비즈"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말한다.
- 2. "업력"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속 유지된 기간으로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일로부터 이노비즈 선정 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때 휴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3. "평가기관"이란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기술보증기금을 말한다.
- 4. "이노비즈넷"이란 이노비즈를 선정·관리하고, 이들 기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구축한 종합정보망(www.innobiz.net)을 말한다.

- 5. "자가진단"은 이노비즈로 선정 받고자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이노비즈넷에 구축된 해당 업종의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에 따라 스스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 6. "기업합병"이란 두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되면서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게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
- 7. "중소기업통합"이란 개인중소기업 간의 통합 또는 개인중소기업과 법인 중소기업 간의 통합방식에 의해 법인중소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8. "회사분할"이란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9.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한다.
- 10. "관리기관"이란 이노비즈 평가지표 개발, 제도개선, 이노비즈넷 관리· 운영, 현장평가업무 관리 등 이노비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이하'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이노비즈 신청대상) ① 이노비즈로 선정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다.
 - 1.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 2.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F')
 - 3. 농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A01')

- 4. 비제조업(제조업, 건설업, 농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
- 5. 소프트웨어업

업 종	산업분류코드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1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2
기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1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J62010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J62021

- 6. 바이오업(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 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표」중 바이오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 7. 환경업(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련기술을 이용하여 오염 저감시설 및 기기 등을 설계, 제작, 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 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표」중 환경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 8. 전문디자인업(한국표준산업분류-M732)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 1.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 3. 신용도판단정보, 5. 공공정보의 1) 체납 정보 등"에 등록 중인 기업(단, 제3호의 단서 조항 적용 기업은 예외)

-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3.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 4.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제4조(업종의 구분) ① 이노비즈 신청기업의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 큰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② 업종을 전환하는 기업은 실제 영위중인 업종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환하는 업종에 종사할 종업원 수, 생산설비투자 등을 감안하여 전환하는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이노비즈 평가지표 적용 시 업종구분은 신청기업의 영위업종 및 평가신청 기술분야에 따라 제3조제1항의 업종 중 하나로 분류한다.
-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양도 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

- 3.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 4.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 ② 흡수합병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피합병된 기업의 업력을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피합병된 기업과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종이 동일할 것
 - 2.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의 50%이상일 것
 - 3. 피합병기업의 상근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합병 후 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 ③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1.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 2.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설기업과 업종이 동일한 소멸 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 ④ 회사분할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1. 분할 이후 해당기업의 매출실적이 확인될 것
 - 2. 기존기업 또는 기존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분할 후 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 ⑤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흡수통합의 경우에는 제2항을,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하여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1. 통합 후 법인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통합 전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하고 통합 전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통합 전 양기업의 업종을 동시영위 포함)할 것
-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설립·존속되는 법인의 주주일 것
- 3.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과점주주의 개인사업을 승계하는 것이 아닐 것
- ⑥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 법인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개인기업의 경우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제6조(이노비즈 평가기준) ①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3의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와 평가기관이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고시한 기술 평가표로 한다. 다만, 평가기관은 기술평가표를 이노비즈넷에 고시 또는 개정 고시하기 전에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평가지표, 운영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4의 기술·경영진단평가표로 한다.
- 제7조(이노비즈 신청) ① 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 이라 한다)이 이노비즈넷의 신청절차에 따라 일반현황, 재무상태 등을 입력하고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기관이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이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절차 중 신청기업의 자가진단 실시결과 평가점수가 65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현장평가 등) ① 제7조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받은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이 제3조에 따른 신청자격을 구비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평가 7일 전까지 평가일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준비할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 등을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평가일은 신청기업과 평가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별표 3에 따른 기술혁신시스템 해당 업종의 평가지표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고시한 기술평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위하여 신청기업의 업종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평가자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자의 현장평가 수행경험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을 1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청기업의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 벤처기업청 직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평가단은 현장평가 장소에 신청기업 소속이 아닌 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평가기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현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 절차, 세부 평가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신청취소 등) ① 신청기업이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 실시 전에 기업의 내부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현장평가를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평가 기관에 이노비즈 신청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의취소는 이노비즈넷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신청기업이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이노비즈넷에 입력한 정보 및 평가기관이 신청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모든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수용하여 신청 기업이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이노비즈넷에 입력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평가기관에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신청취소 후 재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를 삭제하거나 제출서류를 반려 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현장평가업무 처리기간) ① 평가기관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노비즈넷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리기간은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21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간은 최대 90일까지로 한다.
 - 1. 제8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신청기업에게 통지한 평가일 전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통지한 평가일로부터 수수료 납부일까지의 기간
 - 2. 제8조제1항의 평가계획을 통지한 후 신청기업이 평가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평가기관에 요청한 경우, 통지한 평가일로부터 신청기업의 요청에 따라 연기한 날까지의 기간
- 제11조(이노비즈 선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이고, 기술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이노비즈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은 평가기관이 평가결과를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 ② 평가기관은 평가결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업에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기업으로 부터 평가결과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 제12조(확인서 발급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이하 "확인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이노비즈 영문확인서(이하 "영문확인서"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이노비즈 중문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확인서의 발급·교부에 관한 업무는 해당 신청기업의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 벤처기업청장이 수행한다. 단, 영문확인서의 업체명, 대표자, 주소는 대문자로 명기하고, 영문 성명은 여권정보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확인서 발급지역은 기업의 본사를 기준으로 하고, 확인서 발급명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확인서의 발급번호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따라 부여한다.
 - 1. 확인서의 발급번호는 11단위(000000-00000)로 부여한다.
 - 2. 앞부분 6단위 중 첫째·둘째자리는 발급년도, 셋째·넷째자리는 발급지역, 다섯째·여섯째자리는 평가지표를 의미하며 다음 각목에서 정한 표기방법 및 표기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 가. 발급년도 표기방법 : 발급년도의 마지막 2자리(예 : 2014년의 경우 "14"로 표기) 숫자로 표기
 - 나. 발급지역의 표기기준 : 서울은 01, 부산은 02, 대구·경북은 03, 광주·전남·제주는 04, 대전·세종은 05, 경기는 06, 인천은 07, 강원은 08, 충북은 09, 전북은 10, 경남은 11, 울산은 12, 충남은 13으로 표기
 - 다. 평가지표 표기기준 : 제조업은 01, 비제조업은 02, 소프트웨어업은 03, 환경업은 04, 바이오산업은 05, 건설업은 06, 전문디자인업은 07, 농업은 08로 표기
 - 3. 뒷부분 5단위는 발급지역, 평가지표와 관계없이 매 연도별로 확인서를 발급한 순서에 따라 이노비즈넷을 통해 발급번호를 부여한다.

- ③ 등급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한다.
 - 1.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 800점 미만인 경우 "A" 등급
- 2. 평가점수가 800점 이상 900점 미만인 경우 "AA" 등급
- 3. 평가점수가 900점 이상인 경우 "AAA" 등급
- ④ 유효기간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제13조(확인서의 재발급) ① 이노비즈로 선정된 기업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1. 상호,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 2. 확인서의 분실·훼손 등의 경우
 -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수·합병, 통합, 조직변경 등을 사유로 이노비즈 선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 받은 지방중소 벤처기업청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재발급할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확인서의 본문 아래 부분에 재발급 사유 및 재발급 일자를 명기하여야 하며,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확인서 번호의 지역코드를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선정의 승계)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한 기업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노비즈 선정의 승계가 가능하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확인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 1.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2.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인 경우(단,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가 아닌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3.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제5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이노비즈인 경우
- 4.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제5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단, 흡수통합의 경우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호 규정을 준용하여 승계 가능여부를 결정한다.)
- 5. 「상법」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을 변경한 경우
- 6. 제13조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의한 가업 상속공제를 받은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 제15조(유효기간의 연장) ①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선정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사실을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해당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만료 35일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 연장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술·경영진단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평가결과를 신청일부터 21일 이내에 이노비즈넷에 등록하여야 하며,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기업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기업으로 하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대하여 평가기관이 평가결과를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갱신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 연장기간은 확인서 발급일이 기존 유효기간 범위 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3년으로 하고, 기존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확인서를 발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 ④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유효기간 연장에 의한 확인서의 갱신발급은 최초 발급된 확인서의 번호를 그대로 부여하고, 확인서 번호의 앞쪽에 R표기를 더하여 신규지정과 구별되게 한다.
- ⑥ 평가기관은 제2항 및 제4항의 업무를 관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사후관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노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기술혁신시스템 운영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 제17조(선정취소)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노비즈 선정기업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기업에 대하여 이노비즈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선정기업이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
 - 2.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
 - 3. 제3조에 따른 이노비즈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
 - 4. 휴·폐업, 조업중단, 금융규제, 국세체납 등으로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한 경우
 - 5. 기타 제16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평가기관은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선정취소 사유를 발견할

경우 해당기업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선정기업이 선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 해당기업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취소하였을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15일 이내에 해당기업의 확인서를 반납 받아야 하며, 해당기업이 확인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그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수수료 등) ① 신청기업은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 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하되 신청기업이 부담한다.
 - 1. 제7조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의 경우에는 70만원을 수수료로 한다.
 -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의 유형으로 확인받은 벤처기업이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노 비즈 선정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기업의 수수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 3. 제15조에 따른 선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현장평가의 경우에는 40만원을 수수료로 한다.
 - ② 수수료를 납부하고 현장평가를 진행한 경우에 신청기업은 수수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의 경우 현장평가 탈락 시 수수료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관리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수료 징수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9조(이노비즈 선정 관련정보 관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노비즈 확인서 발급현황, 대표자·상호·소재지 등의 변경에 따른 확인서 재발급,

이노비즈 선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확인서 갱신발급, 이노비즈 선정 취소 등의 경우 이노비즈넷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 제20조(이노비즈 정보관리) ①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자가진단, 현장평가, 사후관리 등의 현황을 관리기관, 평가기관 및 해당기업이 수시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이노비즈넷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 ②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통계현황 등을 매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세부지침의 제정)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기업 선정·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22조(이노비즈 협의회) 관리기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노비즈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23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4호, 2018.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신청되어 처리 중인 이노비즈 선정 및 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노비즈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